


# 연구결과 요약집

2005

 한국조세연구원

## 序 言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과 재정정책 등 경제 관련 정책들을 연구·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2년 9월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개원 이후 저희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고 폭 넓은 연구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확립과 세무행정의 발전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바, 보다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정책의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국가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조세 및 재정분야에 대한 본원의 연구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연구결과를 한 데 모은 이 연구결과 요약집이 아무쪼록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8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 일 러 두 기

1. 본 책지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04년 이후 발행한 보고서의 내용 요약 및 주요 목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4년 이전에 발행한 보고서는 '1993~2004 발간도서목록'에 수록하였습니다.
2. 지면 관계상 용역보고서, 번역자료, 일부 기타보고서 등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3.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전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f.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4.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연구보고서 ..... 7
  - 04-01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9
  - 04-02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 13
  - 04-03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28
  - 04-04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 47
  - 04-05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 53
  - 04-06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 58
  - 04-07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 61
  - 04-08 법인세 부담 연구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66
  - 04-09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I): 고령화 대응 조세·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72
  - 04-10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 77
  - 04-11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 81
  
- 정책보고서 ..... 87
  - 04-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정비 ..... 89
  - 04-02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II)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97
  - 04-03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 105
  - 04-04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 112

04-05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 .....	118
04-06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	125
● 기타보고서 .....	12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131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135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	13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141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	145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	149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관한 이해 .....	152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	156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	163
● 『재정연구』 .....	167
● 『재정포럼』 .....	171
● 1993~2004 발간도서목록 .....	193

# 연구보고서



##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 박기백·김 진·전병목
- ◆ 2004. 12.
- ◆ 132p/6,000원

기존의 소득분배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소득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부 재정으로 인한 소득분배의 변화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재정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 재정의 양면인 조세와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하여 개인의 가처분소득 또는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지출을 이천지출, 국방·치안·행정 등의 순수공공재, 교육·의료·주택 등의 비순수공공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순수공공재의 경우에는 공공재 편익의 소득계층간 귀착비율을 '소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여 구하고 전체 정부지출 규모를 소득계층별로 분배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비순수공공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도시가구와 농촌가구를 합산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가계의 소득에 간여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인 시장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대폭 상승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하였으나, 2001년에는 0.27227, 2002년은

0.27085, 2003년은 0.28563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의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이전소득 및 세금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2000년 이전까지는 이전소득의 효과가 작았으며, 세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세금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전소득의 효과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정부의 이전지출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입 후 가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2001년에는 0.26324, 2002년은 0.26169, 2003년은 0.27403이다. 앞에서 살펴본 시장소득 대비 정부의 개입 후 가치분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각각 -3.32%, -3.38%, -4.06%이다. 이는 시장소득에 비해 정부의 개입 후 가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조세 및 이전지출 정책으로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소득분배를 다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개입 후 가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대비 가치분소득에 순수공공재로부터의 편익액을 합한 지니계수 변화율이, 분석대상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0.86~1.07%정도 높아졌다.

주택·교육·의료 등 특정 정부지출은 반대로 가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택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큰 반면에 교육 및 의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건강보험료 지출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켰으나, 위기 이후부터는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10년에 걸친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순조세, 순수공공재, 비순수공공재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이전소득 및 세금을 합한 순조세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며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이전소득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치안·행정·외교 등 순수공공재는 지니계수를 다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주택·교육 및 의료는 대체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이, 교육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당 효과는 1999년 이후로 2003년까지 교육·주택·의료 순으로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 목 차

I. 서 론

II. 기존 연구 및 분석방법

1. 기존 연구
2. 분석방법

III. 소득세 및 이천지출

1. 도시가계자료
2. 농촌 가구
3. 소득분배 효과

IV. 순수공공재 재정지출

1. 이론모형
2. 실증분석

V. 특정 재정지출

1. 자료 및 배분방법
2. 재분배 효과

VI. 결 론

참고문헌

〈부록〉 근로자 가구의 재분배 효과

---

연구보고서 04-02



##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 ◆ 김중면·성명재
- ◆ 2004. 12.
- ◆ 222p/9,000원

### 1. 연구의 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반 재정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추세가 향후 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보장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크게 (1)국민연금 (2)건강보험 (3)고용-산재보험 (4)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등 4개 제도를 통해 발생한다. 우리는 이 중 공적부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정지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사회복지의 4대 부문 모두 외환위기 이후 약 2배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공적부조 중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같은 기간에 약 3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거의 4배로 증가하여, 향후 증가 속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함께 공적부조, 특히 기초생활보장 지출 역시 장기 재정소요의 윤곽이나마 파악하는 것이 향후 국가재정의 중장기 기획 및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공적부조는 특정계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공적부조의 장기 재정소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득분포를 명시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분포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포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종면·성명재(2003)의 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소득분포의 특성을 분석·규명한 후, 이를 토대로 장기 소득분포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도출한 장기 소득분포를 응용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정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분포를 명시적으로 감안한 장기 재정지출 소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정책의 정책 추진방향 점검 및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소득분포의 특성

### 가.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소득분포

기존 연구(김종면·성명재 2003)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구소득분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은 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사실이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표준편차) 2개의 모수로써 분포 전체를 정의할 수 있으므로, 장래 가구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경우, 장래 분포의 예측은 분포 전체의 예측을 시도하지 않고 자연대수 가구소득의 평균과 분산 2개 모수를 도출함으로써 간략히 수행할 수 있다.

도시가구조사자료에서는 전 가구의 소득분포는 물론, 가구주 연령별로 분할한 각 소표본의 소득분포에서도 자연대수 정규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가구의 소득 관측치에 대해 자연대수를 취한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는 Jarque-Bera의 통계적 검정법을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커널기법에 의해 분포 함수를 구하여 정규분포와 육안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소득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가구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장래 가구소득분포를 시도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는 도시가계자료가 2인 이상 도시가구로 한정되고,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농촌지역 인구가 향후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급속히 감소한다고 하여도, 자영업자 가구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가구의 소득까지 감안하였을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소득분포를 전망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 5년간의 간격으로 시행되는 가구소비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와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도시가계조사자료 만큼 긴 시계열은 확보할 수 없으나 1인 및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1) 전체가구의 소득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의 분석에서와 동일한 기법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1인 및 자영업자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의 소득분포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검정과 비모수적 분포도 검토에서 모두 자연대수 정규분포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전연령 표본과 연령별 표본에서 모두 나타나는 결과이다. 비모수적 기법으로 추정된 경험분포함수를 정규분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분포의 왼쪽 꼬리가 두터워서 대칭성이 깨지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 2)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분포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도시가계조사자료와 유사하게 표본을 2인 이상 가구로 제약하되 자영업자 가구도 포함시킨 결과, 경험분포함수가 사실상 정규분포라고 간주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결과가 개선되었다. 따라서 자영업자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구원수별 가구소득분포

가구원수, 즉 가구규모별로 표본을 분할하여 각 소표본의 소득분포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에서는 소득분포의 왼쪽꼬리가 두터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분포의 왼쪽에 작은 크기의 “혹”이 붙어 있는 현상이 관측되어 역시 자연대수 정규분포와 다른 경험분포를 얻었다. 그러나 2인가구에서부터 7인가구까지는 각각 자연대수 정규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8인 이상 가구에서는 1인가구와 반대로 분포의 오른쪽에 혹이 붙은 모양이 관측되어 자연대수 정규분포가 아니었으나, 전체가구 중 8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매우 작아서 가구소득분포의 전망을 구할 때 사실상 무시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4) 1인가구 소득분포의 분할

1인가구 소득분포는 자연대수 정규분포가 아님을 앞서 확인하였으나, 표본을 다시 35세 이하 가구주와 36세 이상 가구주로 분할한 결과, 각각의 소표본에서 자연대수 정규분포와 매우 유사한 경험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즉 1인가구의 경우에도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이용한 소득분포 전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연령별 소득분포의 전망

향후 소득분포는 전체 및 연령별 가구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각 분포의 평균과 분산(표준편차), 그리고 각 연령의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인 가중치를 알면 분포를 모두 전망할 수 있다. 연령별 평균과 분산은 각각 횡단면에서 관측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전망을 도출하고, 가중치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을 이용하여 별도로 추정할 수 있다.

---

### 가.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의 평균 전망

자연대수 가구소득의 평균을 횡단면에서 연령별로 관측하였을 때, 과거 20여년간의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는 횡단면 연령별 평균의 역U자 형태 곡선의 모양이 불변이고, 다만 수직으로 평행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때 수직 평행이동의 폭은 경상GDP 성장률과 총인구의 자연대수에 의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GDP의 경상성장률에 대해 장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치를 대입하면 향후 가구주 연령별로 자연대수 가구소득의 평균을 예측할 수 있다.

### 나. 가구주 연령별 가중치 전망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소득분포 전망은 기본적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관측된 소득분포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만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 두 가지 자료가 모두 도시지역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 보고서의 소득분포 전망은 도시지역 가구에 대해서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 가구에 대한 대표성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분포 전망에 필요한 연령별 가구분포 또는 연령별 가구 가중치 역시 전 가구가 아니라 도시지역 가구에 대한 전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촌지역을 포함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장래가구추계』의 방법을 응용하여 별도로 장래 도시가계추계를 시도하였다. 우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격으로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에서 도시지역 인구만 추출하여 각 연령별 인구 중 가구주일 확률, 즉 가구주율을 추계하였다. 이를 장래 인구추계에 적용하여 향후 연령별 및 가구규모별 가구수를 추계하였는데, 이때 장래 인구 역시 도시지역 인구로 제한하였다. 도시지역 인구의 장래추계는 2000년에 관측되는 인

구 표본 중 농촌지역인구의 출생 및 사망률을 감안하여 향후 농촌지역 인구를 추계하여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로부터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도시지역 가구의 장래 추계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가구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면서 가구의 절대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예측되었다. 즉 1~3인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장 비중이 큰 4인가구는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완만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5인가구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었으며, 7인이나 8인 이상 가구는 사실상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비중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저소득층 문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1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의 약 15%에서 2030년 경 19%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35세 이하 1인가구의 수는 2030년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따라서 1인가구의 향후 증가는 거의 36세 이상의 가구주의 증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장년 및 노년의 1인가구 증가는 특히 65~70세의 가구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소위 '독거노인'의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다.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의 분산 전망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 분산도 평균의 경우와 유사하게 횡단면에서 관측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전망치를 도출한다. 횡단면에서 연령별로 소득분포의 표준편차를 보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직선형태를 과거 20여 년간 유지해온 사실이 관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직선형태의 연령별 표준편차 곡선의 상하이동폭은 과거자료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외생적으로 전연령 소득분포의 지니계수의 장기변화 시나리오를 몇 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의 표준편차를 역산하여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니계수 증가 시나리오는 하한, 중간, 상한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하한 시나리오에서는 지니계수가 향후 불변이라고 가정하였다. 중간 및 상한 시나리오에서는 지니계수가 매년 각각 0.003p와 0.006p 증가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 4. 가구원수별 소득분포의 전망

앞에서 각 연령별 소득분포와 각 연령계층의 가중치를 구하였으므로 연령별 소득분포는 물론,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연령보다도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를 우선 감안해야 되므로 가구규모별 소득분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구규모별 소득분포 전망을 과거자료로부터 새로이 도출하지 않고, 연령별 소득분포를 이용하여 도출한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를 가구규모별로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앞서 언급한 도시가구 추계로부터 가구규모별 장래 가구수의 예측치가 있으므로 이를 장래 가구규모의 가중치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가구소득은 가구구성원수의 일정한 지수를 취한 값으로 나누었을 때 균등화된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를 가구규모별 소득분포로 분할함으로써 분포 전망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균등화 가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구소득을 구성원수  $n$ 의 제곱근으로 나누면 소득분포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균등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추세는 가구소득을  $n^{2/3}$ 으로 나누면 가구소득이 균등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구소득을  $\sqrt{n}$ 과  $n^{2/3}$ 으로 나누었을 때 가구소득이 균등화된다는 두 가지 가정을 각각 전체가구의 소득분포에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장래 소득분포 전망을 도출하였다.

#### 5. 기초생계급여 지출의 전망

##### 가. 최저생계비 기준

저소득층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가 빈곤선, 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다. 본 보고서와 같이 소득분포를 구하여 저소득층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는 빈곤선이 소득분포함수의 왼쪽 꼬리의 어느 점에 위치하는가를 분석하

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 또는 최저생계 기준은 크게 나누어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측정되는 절대빈곤 기준과 소득순위나 분포상의 위치에 따라 정하는 상대빈곤 기준이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 기준이라고 하여도 주관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빈곤 수준 역시 사회의 다른 가구들의 생활수준과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상대빈곤 기준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상대빈곤 기준은 대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의되는데, EU에서는 중위소득의 40%, 50%, 60% 등의 기준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정책에서 사용하는 빈곤 기준은 분석 결과 이 중에서 중위소득의 40%에 가깝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가구의 규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009년에 OECD 기준에 부합되도록 2005년부터 가구 균등화척도를 매년 조정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OECD 기준의 가구 균등화척도는 가구규모에 따라 4인가구의 일정비율로 정해진다. 이러한 OECD 기준의 가구 균등화척도를 분석한 결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n^{2/3}$ 으로 나누었을 때 동일한 균등화 생계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ECD 기준의 가구 균등화척도를 단순화하여 가구규모  $n$ 의  $2/3$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소비수준을 균등화하여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나. 최저생계비 전망 및 차상위계층 도입의 효과 분석

가구규모별 소득분포의 분할에 사용되는 소득의 균등화척도를  $\sqrt{n}$  또는  $n^{2/3}$ 이라는 2 가지 가정하에 최저생계비 전망을 도출하였다. 이때 최저생계비 설정 기준은 각 가구규모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하는 방법과,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구한 후 각 가구규모별로  $(n/4)^{2/3}$ 의 균등화척도를 적용하는 방법 등 2 가지를 적용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이 가구규모와 상관없이 10% 내외로 동일하게 나타나며, 다만 소득 균등화척도가  $\sqrt{n}$ 인 경우에  $n^{2/3}$ 인 경우보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이 다소 낮게 예측되었다. 또

한 전반적인 소득형평성이 지니계수 증가의 중간 시나리오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은 2005년의 약 9%에서 2030년 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다른 규모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OECD 기준의 가구 균등화척도를 적용하여 정하는 경우도 검토하여 보았다. 이때 소득분포가 균등화척도  $\sqrt{n}$ 을 따르는 경우에 전반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이 앞서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차상위계층 도입의 효과도 분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으로 당초 거론되었던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과 실제로 채택된 최저생계비의 120%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최저생계비의 120%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차상위계층 가구의 비중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비중의 1/2~2/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채택하였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비중의 2배에 육박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 다. 기초생계급여 지출 증가율 전망

가구규모별 소득분포와 최저생계비 전망까지 도출한 이상,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합산하여 총 잠재 기초생계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물론 기초생계급여의 수급조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외에도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기초생계급여 지출은 이러한 잠재 기초생계급여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잠재 기초생계급여의 증가율로써 실제 지출 증가율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는 있다.

지니계수의 장기 증가에 대한 하한 시나리오를 채택하였을 경우, 지니계수와 자연대수 소득의 분산이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장기적으로 기초생계급여 지출의 증가율은 경상GDP 성장률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지니계수가 향후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간 시나리오에 따라 지니계수가 매년 0.003p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초생계급여의 증가율은 GDP 성장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험 중 장기적으로 지니계수의 증가가 가장 높은 경우처럼 지니계수가 매년 0.006p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기초생계급여 지출의 증가율은 GDP 성장률의 2.5배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어 재정에 심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 1인가구에 대한 분석

이상의 논의는 2인 이상 도시가구로 국한된 분석에 기초하였다. 1인가구는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 독거노인 등 상당수의 가구가 빈곤선 이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포함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1인가구의 소득은 1996년과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단 2회만 관측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 전망을 시도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2인 이상 가구로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록 2인 이상 가구의 분석 결과에 비하여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여도, 마지막으로 1인가구의 소득분포 전망을 도출하여 기초생계급여 추계를 시도하였다. 가구소득분포가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 특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앞서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5세 이하와 36세 이상 가구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35세 이하 1인가구는 소득수준이 거의 2인가구 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으로 보이며,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도 매우 작았다. 반면 36세 이상 1인가구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거의 20%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일 것으로 전망된다.

## 6. 요약 및 시사점

### 가. 주요 결과 요약

첫째, 우리나라 도시가구 소득분포의 중요한 특성으로 가구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본 보고서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김종면·성명재(2003)에서 이미 밝힌 사실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결과를 확장하였다. 즉 2인 이상 도시지역 근로자 가구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한 경우에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분포가 대체로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가구의 소득분포는 물론, 각 연령별 분포 및 가구규모별 분포에서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특히 1인가구의 경우에는 35세를 기준으로 2개의 소표본으로 분할하면 분할표본이 역시 자연대수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가구 소득분포는 연령 및 가구규모별 계층으로 분할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자연대수 정규분포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소득분포가 연령 및 가구규모별로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장래 소득분포를 전망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성을 이론형태로 정리하여 계량화된 소득분포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의 장기 증가율 등 기초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장래인구추계로부터 가구 전망을 도출하면 연령별 소득분포와 가구규모별 소득분포를 전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최초로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장기 전망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보고서에서 도출한 소득분포의 장기 전망을 이용하여 역시 최초로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장기 전망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대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계급여 추이의 분석은 장래의 소득분포를 명시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도되지 못하였던 과제였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주요 사회보장정책 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을 생각하면, 기초생활보장 지출의 장기 증가 추이의 윤곽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중장기 국가재정 기획에도 중요한 기여라고 사료된다.

#### 나. 정책시사점

첫째, 기초생계보장 지출의 장기 지출 추이를 전망한 결과,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전반적인 소득분배 형평성의 장기 증가 추세에 따라 GDP 성장률보다 2~2.5배 정도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정책의 지출 증가율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므로, 중장기 재정기획에서는 이 사실을 반영하여 다른 부문과의 자원배분 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초생계급여 지출의 장기 증가율은 지니계수가 불변인 경우에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과거 20~30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니계수가 일정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런 경우에는 기초생계급여 지출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보고서의 전망에서는 최악의 경우 기초생계급여의 장기 증가율이 지니계수 증가에 따라 GDP 성장률의 2.5배 수준까지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므로, 관련정책에서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도 지적하고 싶다.

셋째, 자료의 제약으로 보다 정교한 분석은 불가능하였지만, 1인가구의 소득분포를 보면 36세 이상 1인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연령을 보아 이는 바로 장년층 및 독거노인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35세 이하의 젊은 1인가구주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매우 낮은 계층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35세 이상 가구주 중 50대와 60대 가구주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게는 저소득층 정책의 시각에 국한되지 않고, 고령화 및 취약계층 정책 등 다각도의 복

합적 시각에서 정책 접근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다.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첫째, 본 보고서에서는 연령별 소득분포 전망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시 가구규모별 소득분포를 전망하여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구규모별 소득분포에서는 연령분포를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전 연령 가구의 소득을 가구규모별로 추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저소득층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가구규모별로 가구주나 구성원의 연령까지 감안한 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세부분석까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둘째, 역시 연령별 분석에 관한 문제로서 66세 이상 가구주가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 관측 자료가 적어서 제외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기간을 2030년까지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문제가 본 보고서의 결과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간에는 고령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특히 고령 1인가구, 즉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 또는 빈곤 계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령 가구의 소득을 앞으로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면서 고령층에 대한 재정지출의 변화가 고령층의 소득분포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분석은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기간에 관측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향후 본격적인 연금 급여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고령층의 소득에 가져오는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측면에서의 연금제도의 영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에 어떠한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하는가를 소득분포 전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청소년 계층보다는 은퇴연령에 비교적 가까운

장년층의 경제활동참여 및 이들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기대한다.

◆ 목 차

- I. 서론 : 문제의 제기
  - II.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 1. 분석자료
    - 2. 분석방법 : 소득분포의 추정·예측
    - 3. 모의실험을 통한 재정지출 소요의 추정과 기대효과
  - III. 소득분포의 특성 분석
    - 1.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소득분포
    - 2.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소득분포
    - 3. 소결
  - IV. 소득분포의 전망
    - 1. 소득분포의 표기(notation)
    - 2.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 평균
    - 3. 가구주 연령분포
    - 4.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 표준편차
  - V. 가구원수별 소득분포 전망
  - VI. 가구원수별 소득분포를 이용한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 1.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급여기준 분석
    - 2. 최저생계비 전망
    - 3. 기초생활보장 지출 증가율 전망
-

4. 차상위 계층 도입의 효과
5. 지니계수 증가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6. 1인가구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

#### VII.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I〉 연령별 자연대수 소득분포 : 가구소비실태조사
  - 〈부록 II〉 장래도시가계 추계
  - 〈부록 III〉 분포의 합병과 분할
  - 〈부록 IV〉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1982~2003)
-



##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 성명재·김 종 면
- ◆ 2004. 12.
- ◆ 240p/9,000원

### 1. 연구의 방향

1997~1998년의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구조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대외개방이 일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격화되었으며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특히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부문의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전통산업과 신흥산업간에 명암이 엇갈리면서 양자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기양극화 현상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산업구조와 성장동력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특이한 현상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는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부문별 성장 또는 쇠퇴 양상을 비대칭적으로 나타내면서 소득분배 구조도 부문별로 매우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는 산업별로 변화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의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도 부문별·부문간 분배구조의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연구의 대부분은 가구 전체 또는 가구유형별로 소득분배 문제에 국한하고 있어 각 부문별 특성에 근거한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요인이나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격차의 발생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에 있어 그동안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던 부문에 특화하여 소득분배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가구유형별 접근방법에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분배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에 의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문제를 비롯하여 산업별·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격차 문제에 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향후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 및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도시가구의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 가.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래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하락추세를 보여 상대소득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에는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0.28678이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2년에는 0.24147로 낮아졌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저점 부근에서 안정추세를 보이면서 1995년에 0.24280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소득 격차는 확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경제위기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초과상승(overshooting) 현상을 보였다. 즉, 1996년에 지니계수가 0.24685로 소폭 상승한 이후 1998년의 경제위기에는 0.31121로 급상승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소의 등락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0.27~0.28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8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니계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의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하락추세를 보였던 데에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로 반전된 데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몰락 또는 고소득층의 괄목할 만한 소득증가 현상 등이 기간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의 급변 등에 따라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장기실업 추세가 확산되었다. 취업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한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극빈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 둔화 또는 몰락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대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반면에 IT 및 금융산업 등에서 소수의 고소득층의 경제적 도약 또한 이 기간 동안 상대소득 격차를 확대시킨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에는 지니계수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를 논하자면 소득분배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연령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생애소득의 흐름을 보면 청년기(또는 시장진입기)에는 소득수준이 낮지만 연령과 경험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다가 장년층에 접어들면서부터 퇴직, 은퇴, 실직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소득이 낮아지는 역U자 형태의 소득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적으로 시장진입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평균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져 40대 또는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50대 후반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연령별 소득분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난 20여년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97~1998년의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모든 연령층의 평균소득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20대 초반 이하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소득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소득 1~2분위의 최저소득층에서 소득감소세가 현저하게 두드러졌다. 이들 소득계층이 연령적으로는 20대 초반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층 중 상당히 많은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별 소득패턴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고소득층에서는 '소득확장기'가 길고 저소득층에서는 '소득하강기'가 긴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소득 직종에서 오래 생존하기 때문인 반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급여수준이 낮은 시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고소득층의 소득확장기가 길어지는 추세가 일생을 두고 지속된다면 생애소득(lifetime income) 분배격차는 경상소득(current income) 분배격차보다 더 커질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실제의 상황이라면 부의 분배격차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므로 향후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문제는 단순히 최저생계 보조 이상의 형평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소득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생애소득에 대한 소득분배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논의는 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에서 일단 소득순위가 결정되면 생애를 통틀어 소득순위가 변동 없이 일정하게 고정된다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위에서 제기한 생애소득 분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이 문제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다. 가구원수별 소득분배 구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분포상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첫째,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4인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대가족 형태의 가구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소수가구의 비중이 급상승하는 핵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수가 많으며 따라서 소득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원수와 평균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비례관계는 아니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소득도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속도는 가구원수의 증가속도보다 느리다.

가구원수별로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2인가구가 3인 이상 가구보다 높다. 그러나 3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지니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2인가구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인 가구의 구성이 이질적인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류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가구원수별 소득분포의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검증해 볼 수 있다.

### 3.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 가. 교육수준과 소득분배간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 변화를 소득분배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세 가지 경로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의 분포가 장기간에 걸쳐 변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교육수준별 계층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구성이 변화하는 문제이다. 둘째, 각 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가 변한다면 각 교육계층별 가중치(계층의 상대적인 크기)에 변화가 없더라도 소득분

배 구조가 달라진다. 이는 ‘계층간 지니’, 혹은 계층간 소득분배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계층분포(가중치)나 계층간 상대소득의 변화가 없더라도, 각 계층내에서 전반적인 상대소득 격차가 변한다면 전반적인 소득분배 구조도 변할 것이다. 이를 ‘계층내 지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나.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추이

지난 20여년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학력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의 표본비중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구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 7단계의 교육수준 중 가장 점유비중이 높은 것은 고등학교 학력이다. 1985년에는 가구주의 학력이 고등학교인 가구가 전체의 37.7% 정도였으며 1990년대 초까지 상승하여 45% 수준에 도달한 이후 안정추세를 보이다가 비교적 최근에 대학 및 대학원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추세적 변화현상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빠르게 상향평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표본구성을 살펴보면 학력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층 점유비가 높아지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소득층 점유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를 분기점으로 그 이하와 그 이상의 학력층으로 확연히 구별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소득분포의 특징을 찾자면, 첫째,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도 함께 상승한다는 점과, 둘째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 동일 학력수준내 가구들의 상대소득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 다.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특징

고졸 가구주의 비중은 1985년 37%에서 1988년 44%까지 급속히 증가하다

가 이후 45%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가구주 중 고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1980년대 후반에 이 계층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니계수 변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졸 가구주 비중의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중졸 및 초졸 가구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학 가구주의 비중이 지난 18년 동안의 관측기간에 걸쳐 사실상 불변인 점도 눈에 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 비중은 전반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초졸과 중졸 가구주 비중은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동 기간에 발생한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 하락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학력 가구주의 비중이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 가구주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가 상승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주 교육수준별 계층내 지니의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계층내 지니가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과 다르기보다는 유사한 집단을 자신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간주하기 쉽다고 보았을 때, 같은 집단 내에서의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사실은 집단간 소득격차가 벌어진 경우보다도 그 가구가 체감하는 소득분배 악화의 정도가 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당시 전 계층에 걸쳐 소득에 심한 타격을 입고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폭등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8년의 2년 동안 지니계수가 폭등하면서도 교육수준에 따라 타격의 정도가 뚜렷이 다르다. 즉,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지니계수의 상승폭이 크며, 이러한 학력수준별 순위에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대졸 가구주 계층의 지니계수가 고졸 계층보다 높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저학력 계층 안에서도 무학, 초졸, 중졸 가구주 계층의 차이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계층이 우선적으로 불

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기서도 저학력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계층내 소득형평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내 지니의 학력수준별 서열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관측되나, 이 기간에는 대졸 계층이 고졸보다 계층내 지니가 높은 현상 등 일부 예외도 관측된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학력수준별 계층내 지니 서열화는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무학, 초졸, 중졸 순의 서열화가 매우 뚜렷해서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같은 계층 안에서도 소득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라. 교육수준이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 중반 이래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연관지어 살펴볼 때, 소득분배 구조 변화의 양상과 원인별로 대략 4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대략 1980년대 후반으로서, 이 기간중 지니계수의 급격한 하락은 초·중졸 가구주 비중의 급감 및 이에 상응하는 고졸 가구주 비중의 증가로써 주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제2기는 1990년 초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구주 학력이 서서히 고학력 위주로 바뀌어와 아울러 교육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데 기인하였다.

제3기는 좁게 보아서 1997년과 1998년 두 해에 걸친 외환위기 기간으로서, 전 계층에 걸쳐 소득이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은 환란으로 인한 타격의 정도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의 이러한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서열화 현상은 환란 이후인 제4기에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기의 특징 중 또 다른 것으로는,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여 교육수준의 분포나 교육수준별 상대소득 구

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수준별로 계층내 소득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환란 이전에 비하여 지니계수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준거집단 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득형평성 악화의 체감 정도는 더 클 수도 있다.

#### 4.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가. 맞벌이가구의 소득변화 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중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경향은 가구주의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고학력층의 맞벌이가구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고학력층의 맞벌이가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취업근로자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2003년 현재 3,794만원으로 추정된다. 맞벌이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4,083만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3,470만원보다 약 18% 정도 높다. 1980년대 후반에는 비맞벌이가구의 총소득 수준이 맞벌이가구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20여년 동안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가구보다 더 높은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의 소득은 2003년 현재 비맞벌이가구(2,792만원)가 맞벌이가구(2,683만원)보다 약 90만원 정도 많다. 배우자소득은 맞벌이가구에서 921만원이다. 이는 가구의 소득구성을 보았을 때 맞벌이가구의 자산소득과 기타가구원 소득수준이 비맞벌이가구보다 작음을 시사한다.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은 비맞벌이가구보다 많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초과

누진세율 구조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누진과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부의 합산소득 수준이 동일한 경우라면 단일소득자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높다.

#### 나. 맞벌이가구 비중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사이의 상대비중 변화는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여년 동안 맞벌이가구의 비중 변화가 소득분배(상대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은 최소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소득격차를 축소시켜 주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맞벌이가구의 비중 확대가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가구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곤 한다. 그렇지만 맞벌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다면 이는 1인가구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5.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

#### 가. 산업부문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문을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④

건설업 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⑥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⑦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⑧ 기타의 8개 부문으로 대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상기 분류에 의한 8개 산업부문 가운데 분류가 불분명한 기타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 부문의 가구구성비가 가장 높다.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에는 가구비중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제조업의 가구비중은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의 가구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가구비중이 높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가구비중은 1980년대에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점유비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10%대 중반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건설업 부문은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구비중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광업부문과 전기·가스·수도 부문의 가구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그 밖에 운수·창고·통신과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은 최근 10%에 육박하는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가구점유비가 상승하고 있어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부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가구구성비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부문의 가구구성비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산업부문의 다양화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구조의 특징

산업부문 중 평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기·가스·수도 부문이다. 2003년 현재 이 부문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4,990만원으로 도시가구의 평

균소득 3,535만원보다 27.0% 정도 높다. 최근 이 부문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우리 경제 구조가 정보화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1990년대 말의 IT 산업을 위주로 한 증시의 폭발적 활황 현상은 그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으로는 제조업과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소득수준이 각각 3,857만원과 3,821만원으로 도시간구의 평균소득보다 각각 9.1%와 8.1% 정도 씩 높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 중 하나였다. 다만 최근에는 전기·가스·수도 부문에 비해 신장세가 떨어지면서 수위를 내주었다.

전기·가스·수도 부문의 경우에는 도시간구의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비가 전통적으로 1을 초과하는 대표적인 고소득 부문인데 최근 들어 상대소득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상대소득비가 여전히 1을 상당히 크게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198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광업부문의 경우에는 2003년의 평균 총소득이 3,01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간구의 평균소득에 14.8%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 기타 부문은 평균소득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구조의 특징

도시간구의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액은 1982년 12만원에서 2003년에는 137만원으로 지난 21년간 약 11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득증가율보다 소득세 증가율이 다소 더 높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3.13%에서 3.88%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문별로 소득세 부담을 추정해 본 결과 대체로 소득수준의 차이 순서

대로 소득세 부담의 순위도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에는 이 부문과 평균소득 수준이 비슷한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은 운수·창고·통신업 부문과 소득수준 및 소득세 부담 순위상으로 순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2003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주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요인으로 크게 가구원수, 취업인수, 근로자가구 또는 자영업자가구와 같은 가구유형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본 연구에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할 때, 자영업자가구와 무직자가구에 대한 소득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추정오차로 인해 실제와 상관없이 분석오차에 의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허용되지만 자영업자가구의 종합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등과 같은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영업자가구의 면세점이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낮게 산출된다.

그런데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은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을 포함하여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가구유형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산업부문별 소득세부담률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유형(또는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세 부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간의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분석방법론적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본 연구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할 때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정보는 역소비함수를 이용한 추정소득에 의존하는 만큼, 만약 소득추정 오차에 의해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문제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소득추정

방법에 대한 개선된 방법을 동원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 6. 결론 및 시사점

### 가.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정책시사점

1980년대 중반 이래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제1기)에는 지니계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초·중졸 가구주 비중의 급감과 이에 상응하는 고졸 가구주 비중의 증가 등 교육수준의 상승으로써 주로 설명된다. 1990년 초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제2기)에는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향안정세를 취하였다. 이 기간에는 가구주 학력이 서서히 고학력 위주로 바뀌었다. 아울러 학력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도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였다. 제1~2기의 소득분배 구조를 합하여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굳이 세분하자면 1980년대 후반에는 가구주 학력분포의 급속한 변동이, 1990년대 초반에는 학력계층간 상대소득 격차의 빠른 감소가 소득격차 축소의 주된 요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근저에 작용한 주요 정책수단은 기간에 따라 달랐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1997~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제3기)에는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소득이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환란으로 인한 타격의 정도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외환위기 당시 이와 같은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서열화 현상은 환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4기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으로, 제3기부터 시작된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서열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여 교육수준의 분포나 교육수준별 상대소득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수준별

로 계층내 소득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환란 이전에 비하여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준거집단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득형평성 악화의 체감 정도는 더 클 수 있다.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정책측면에서 4개 기간에 걸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해석하였을 경우, 제1~2기의 상황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물리적인’ 정부정책이 주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꾸준히 고등교육 확대 정책을 견지한 결실로 1980년대 후반에 소득형평성 제고를 달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제2기에서는 주로 계층간 상대소득 격차 감소를 통하여 소득형평성 제고를 달성하였다.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세·재정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인 제4기에서는 교육수준 분포의 급속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4기에서는 계층간 상대소득 수준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 재분배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이상 좁히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유인과 구조가 많이 변했다고 사료된다.

결국 적어도 교육수준이라는 요인을 놓고 보았을 때, 1980년대 초·중반 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에서와 같이 정부정책이 소득분배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던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학력화를 통한 소득격차 축소 정책은 별로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sup>.

#### 나.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른 정책시사점

1990년대 후반부터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이 소득분배 격차를 완화시켜

1)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빈곤의 세습 탈피를 위해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더 유효할 수 있다.

주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도시가구의 취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35.57%에서 52.04%로 19.39%p 상승하였으며, 지니계수는 0.27104에서 0.26626으로 0.00478지니p만큼 하락하였다. 만약 최근의 맞벌이 양상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지니계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가구의 육성·지원은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한 정책방안의 하나로써 제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육아보육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논의가 매우 단선적이지만 육아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면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맞벌이가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보육 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보육 비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에서의 직·간접적 지원에 추가하여, 공급측면에서도 유관 시설의 신설·유지·확대정책 등도 함께 추진하여야 효과적이다. 또한 이 정책은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과도 연계해 볼 때 여성노동력 공급 육성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다.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및 세부담 구조 분석에 따른 정책시사점

산업부문별로 소득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소득격차에 비해 세부담의 격차가 다소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소득세제의 누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자영업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부문에서 소

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 중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소득을 탈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의 소득세제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에 대응하여 근로소득세에는 높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에는 소득공제 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개별사업자 각각에 대한 소득탈루율은 파악할 수 없더라도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율을 알 수 있다면 소득탈루의 정도를 감안하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최소한 평균적으로는 근로소득세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유형별로 과세체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과세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현행의 소득공제 수준이 평균적인 소득탈루율 수준을 적정 수준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유형간에 여전히 소득세 과세의 불공평이 잔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영수증 복권제도, 과세당국의 탈루소득 포착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표가 크게 양성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 실질부담이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의 변화는 자칫 소득유형간 수평적 과세의 형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이고 정치한 연구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일부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담이 자칫 근로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수평적 과세의 형평 원칙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더 과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를 감안하여 소득유형별로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차선책(second best choice)으로서 제안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을 파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이것조차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해결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볼 때 현행 소득세제하에서의 소득유형별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는 적정 수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에 따른 추정오차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유형간 소득세 과세의 형평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오류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 목 차

- I. 서론 :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방향과 대상
  2. 소득분배 관련 기존의 연구성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II.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
  1. 연구의 목적
  2. 분석방법과 연구의 주요 내용
  3. 불평등도 지수 : 지니계수
  4. 불평등도 지수 : SCV, MLD, Atkinson 지수
  5. 분석자료
- III.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1.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2. 연령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3. 가구원수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4. 분기소득 대 연소득 지니계수
- IV.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1. 개 요

2. 가구주 교육수준별 표본분포
3.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의 구성분포
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포
5.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 분할에 의한 지니계수의 분해
6. 교육수준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모의실험 결과
7. 교육수준별 계층내 및 계층간 소득분배의 변화
8.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 소득분포의 특징 :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2. 소득분포의 특징 :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분석결과
3. 정책시사점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 산업부문의 분류
2.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3.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4. 정책시사점

VII. 결 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제약점 및 향후 보완과제

참고문헌

〈부록 I〉 지수의 특성

〈부록 II〉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

〈부록 III〉 도시가구의 가구유형별 취업인수 분포

---



##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 ◆ 김현숙·원종학
- ◆ 2004. 12.
- ◆ 230p/9,000원

### 1. 요약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에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특히 자녀보육이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전형적인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서, 육아 및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영미권 국가들은 EITC를 비롯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 보육료 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현황분석 및 외국의 사례연구의 결과물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혼재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자녀의 보육비용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현황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보육비용 지출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비용을 설명변수로 하는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은 자녀의 보육 및 교육비용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의 내생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함수접근법(control function approach)을 사용하였으며,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과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다항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보육비용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어린 자녀의 존재 그 자체가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보육비용 부담도 기혼여성의 취업과 노동공급시간 증대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의 탄력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6세 이상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혼여성의 취업형태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비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보육비용에 대해 유의적인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어 전일제든 시간제든 노동시장 참여에 보육비용의 부담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전일제의 경우 탄력성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력성의 수치는 노동시장 참여나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의 탄력성 수치보다는 다

소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비용 부담이 기혼여성들이 취업여부를 결정하는데 근로시간의 선택보다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탁아모와 어린이집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 취업여성은 탁아모를 어린이집보다 선호하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9세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취업여성은 어린이집과 탁아모를 타 보육 및 교육시설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은 장시간의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나 보육형태를 선호하며, 일하는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탁아모를 방과 후 보육형태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취업모에게는 장시간의 보육 및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매우 중요한 여건임을 확인하게 된다.

## 2. 정책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의 모의실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도 계산하였다. 추정결과와 보육비 지원확대의 모의실험, 보육비 지원의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중·저소득층의 자녀 보육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나타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보육료 보조금 지급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시간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의 보육료 보조금 지원정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보조금을 수령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의 연령이 5세가 넘는 후에도 3년 이상 취업을 계속한다면 여성의 평균임금으로 측정되는 협의의 사회적 편익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자녀 연령별 보육형태에 대한 추정결과로부터 정부의 보육비 지원정

책은 우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 기혼여성을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성의 노동공급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도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네째, 보육시설 유형에 대한 수요분석으로부터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시간의 보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탁아모 제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용만이 아니라 자녀를 보육하는 기관이 자녀의 보육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다섯째, 가정탁아모 제도는 기혼여성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탁아모를 고용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의 보육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탁아모의 이용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이용한 비공식적 탁아의 형태로 그 비용도 천차만별이며 일반적인 보육시설에 비해 평균적인 비용은 매우 낮다. 따라서 가정탁아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가정탁아모의 시장가격이 현행의 일반적인 보육시설과 비슷하거나 높게 책정될 경우, 현재 비공식적 탁아모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탁아모를 통한 보육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보육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제도는 아무리 보육의 질이 높고 보육시간이 길다고 해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탁아모의 이용에 대한 시장가격이 높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현재 비공식적 탁아모 이용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탁아모 이용제도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가정탁아모 제도의 육성과 도입은 바람직하나 상당한 정도의 보조금의 지급 없이 가정탁아모 제도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시키기는 어려우며 정부가 가정탁아모에 대한 지원을 기혼여성 일반에게 시행할 경우, 현재의 저렴한 비공식 탁아모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의 수준보다 높이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단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에게만 가정탁아모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수행한다면 가정타아모에 대한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공급

1.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2.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3.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4. 산업별 취업구조
5. 종사상 지위
6. 여성노동공급과 자녀보육
7. 소 결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1. 우리나라의 보육지원 정책
2. 다른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1. 노동공급 결정요인
2. 여성노동공급함수 모형
3. 실증분석

V. 자녀보육관련 정책제안

1. 여성노동공급의 보육비용 탄력성
2. 자녀보육비용 보조금의 효과 : 모의실험과 비용편익분석

3. 취업모의 자녀보육시설 유형에 대한 수요분석

VI.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주요국의 자녀보육 지원제도

---

연구보고서 04-05



##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 ◆ 안 종 석
- ◆ 2004. 12.
- ◆ 158p/7,000원

### 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정지원이 대학에 미친 영향,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대표되는 지방대 재정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2. 주요 연구결과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 대학들이 지방에 소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대학이 겪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대학의 규모와 대학의 수도권 소재여부가 신입생 충원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의 소규모 대학으로서 학교운영을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어려움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방대학이 특별히 낮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지역별, 대학별 취업률 격차를 잘 설명해 주는 모형과 변수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경제 발전이 그 지역의 대학교육을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같을 경우 1인당 GRP가 클수록 그 지역의 대학생수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의 경우에 더욱 강하다. 한편, 학생수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넷째, 전반적으로 대학교육의 공급은 지역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을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해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일반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다섯째,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목적으로 개별 대학에 주어지는 재정지원이 교원 1인당 학생수로 표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차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데까지 이르는 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해 볼 때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 교육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경제가 대학의 팽창 및 신입생 충원율에 미치는 영향, 졸업생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전문대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발전은 지역 기술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대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2004년에 누리사업을 도입하여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를 6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방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본 연구의 견해는 긍정적이다. 지방대학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대학들이 지방에 소재한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 보편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교육환경이 뒤떨어지며 지속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재정지원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누리사업은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경제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과 지방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보다는 전국적으로 1~2개의 실현 가능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누리사업은 지역혁신 클러스터보다는 지역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의 권역별 재원배분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권역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배분방식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역별 지원액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권역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효과를 추구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흔히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형평성과 효율성간에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역이 지역 내 대학교육이 유발하는 외부효과의 파급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를 포괄하여야 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권역 내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권역 내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과 같은 소규모 지원은 교

원 1인당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일차적인 효과는 유도할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지방대학의 교육성과를 개선하거나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지방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차별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누리사업은 전문대학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학위과정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심대학을 4년제 대학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 중심의 지원으로 연구비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대학원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인력 공급에 중점을 두는 등 전문대학에 보다 적합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지역발전과 대학교육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이 지역산업 발전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기술혁신의 관점에서도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기술혁신 클러스터들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대학보다는 오히려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사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든 지방대 지원사업에서 칸막이를 통해 학위과정간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 목 차

### I. 서 론

### II. 지방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 1. 지방대학의 현황

#### 2. 지방대학이 직면한 문제점

III. 지방대 재정지원 현황

1. 대학 재정지원 체계
2. 대학정책지원사업 현황
3.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IV. 재정지원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1. 문헌조사-연구비 지원효과와 전문대 지원효과 분석
2. 대학 재정지원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V. 대학과 지역경제 발전

1. 대학교육과 지역경제의 상관관계-기존 연구
2. 대학과 지역산업 발전-횡단면 분석
3. 시계열자료 분석
4. 패널자료 분석
5. 지역혁신 클러스터에서 대학의 역할-해외사례

VI. 지방대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 방향

1. 연구결과 요약
2. 지방대 재정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출신학교 소재지별 취업 현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의 기본 통계

〈부록 3〉 지역혁신에 있어서의 대학의 역할-해외사례

---

연구보고서 04-06



##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

- ◆ 김현아·박상원·김형준
- ◆ 2004. 12.
- ◆ 173p/7,000원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경제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먼저, 도시경제학에서 정의한 도시팽창의 원인을 정리하고 지방공공재 공급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택이론을 설명하였다. 지방공공재 비용부담 방식의 의미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명하고 모형별 기반시설 추가비용 산정방식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와 차별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도시가 주는 편익효과와 혼잡효과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규모가 아직 작고 도시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 지방정부는 재산세 부과방식과 부담금 부과방식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정부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재정운용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가 매우 커서 매기(每期) 성장하는 도시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부과 방식을 통한 도시성장관리방식이 재산세 부과방식보다 우월성이 강조된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들에서 이미 경험한 재산세율 인상 거부 움직임과 동일한 결과이다. 도시가 주는 편익이 혼잡보다 클 경우에는 평균비용 부담방식인 재산세 부담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지 않던 주민들이 혼잡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혼잡의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혼잡을 부추기고 있는 기

반시설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서 탄생한 것이 한계비용 부담방식인 기반시설부담금(DIF) 부과조치이다. 기반 시설 건설로 인한 일차적인 수혜자인 개발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도시팽창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DIF 부과방식의 의의를 매기의 변화로서 보여준 것이 본 모형부분의 성과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의 두 도시를 선택하여 앞서 제시한 모형부분의 논거를 수치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단순화된 함수형태를 통하여 보여준 것으로 결과의 해석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도시의 크기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준 것은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아직 도입단계인 우리나라 사례의 특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에서의 도시성장관리 주체, DIF 부과규모, DIF 부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주로 DIF 이후의 집값 상승에 따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도입단계로서 제도의 필요성, 부과 주체, 기타 부담금과의 관계설정 등 제도의 이해가 앞서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한계적인 효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지역적 정보에 달려 있는 사항이므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부담금은 현재 기반시설부담금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포함시켜 기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한다. 기반시설공급을 위한 기초적인 수요조사 단계부터 각 시설간의 중복적인 성격과 미비시설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성장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조달적인 성격만을 강조한다면, 지방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치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규모가 충분히 작을 경우에는 굳이 한계비용 부담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대규모 기반시설에 사용하

고 있는 지방채 방식 또한 지방정부의 대안일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도시팽창과 지방공공재 비용부담 논의의 이론적 배경

1.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념
2. 도시팽창의 원인
3. 지방공공재 공급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택 이론
4. 지방공공재 비용부담 원칙의 이론적 고찰

III.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지방공공재 비용부담 원칙

1. 분석 틀
2. 수치분석

IV. 우리나라 기반시설연동제도

1. 제도개요
2. 화성시 사례
3. 관련 제도와의 비교
4. 해외 사례와의 비교

V.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산정 및 배분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기타 부담금 종류
  3. 일본 구니다찌(國立)市 공공시설관련 규정내용
  4. 미국의 사례
-

연구보고서 04-07



##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 ◆ 박 노 욱
- ◆ 2004. 12.
- ◆ 106p/6,000원

본 보고서는 1995년의 지방선거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그 선출방법이 임명에서 선거로 바뀌었다. 이런 정치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하는 유인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전의 임명직 단체장에 비해 지방정부 재정을 운영할 때, 정치적 비용과 편익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정치적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는 주된 의제는 그 지역의 현안일 것이다. 이전의 임명직 단체장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의 현안은 여러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선출직 단체장이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유인을 가지고 행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 실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측면의 자료를 실증분석한다. 이 기간을 선택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제도 변화가 작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영향을 식별해 내는 데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다. (1) 1995년

의 지방선거 실시 이후에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평균적으로 변화하였는가? (2) 이러한 변화가 각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변화의 차이가 각 지역의 정치적 변수로 설명될 수 있는가?

먼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반영하는 세 가지 지수를 정의하였다. (1) 지방정부가 외부재원보다 내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재정자립도 지수 (2) 지방정부가 내부재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에 더욱 의존하는지를 보기 위한 세외수입 지수 (3) 지방정부가 외부재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방채보다 이전재원에 더욱 의존하는지를 보기 위한 이전재원 지수가 그것이다. 또, 정치적 변수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집권당 소속인지의 여부와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득표율 차이를 정치적 경쟁을 반영하는 척도로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연도별로 있을 수 있는 거시적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효과를 도입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고정적 특성(fixed effect)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기간 동안에 실시되었던 지방선거 이외의 다른 시계열적인 변화나 횡단면적인 교란요인들은 상당히 통제된, 지방선거 실시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또, 추정결과의 견고성을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견고성 검사(robustness test)를 하였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1)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적으로 3% 내지 4.5%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2) 지방선거 이후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의 비중이 3.5% 내지 8%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3) 지방선거 이후 외부재원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0.4% 또는 0.5%포인트 증가하였다. (4)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의 증가율은 작았고, 이전재원의 비중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염려를 불식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일반회계의 자료만을 이용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결과는 지방선거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고 실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통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결과가 지방정부가 재정운영 능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분권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결과가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가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였고, 자체재원 중에도 정치적 비용이 작은 세외수입의 증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2) 외부재원 중 이전재원에의 의존이 증가는 하였으나 그 변화의 크기는 작다. (3)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변수의 역할이 나타났고, 정치적으로 경쟁이 심한 지역이 이전재원을 받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정책연구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영향을 식별해 내는 실증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1)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를 규정하는 재정제도뿐 아니라, 이러한 재정제도를 의도한 바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제도나 환경도 중요하다. (2) 특히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대로, 지방선거 실시 이후 정치적 요인이 지방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요인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여건이 중요하다. (3) 앞으로 본격적인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정치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화와 제도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투표 행태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정보의 공개를 지적할 수 있다.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기존의 연구
    - 1. 국내 문헌
    - 2. 해외 문헌
    - 3. 정치적 분권화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 4.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
  - III. 제도적 배경
    - 1. 지방선거의 실시와 정치적 분권화
    - 2.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와 제왕적 대통령
  - IV. 지방재정의 현황과 변화추세
    - 1. 개 요
    - 2. 전반적인 추세
  - V. 실증분석의 틀
    - 1. 재정운영지수
    - 2. 실증분석 모형
    - 3. 자 료
  - VI. 지방재정운영지수의 변화와 정치적 결정요인
    - 1. 전국 추세
    - 2. 광역자치단체 추세
    - 3. 기초자치단체 추세
    - 4. 고정효과 회귀분석
    - 5. 정치적 변수의 역할
-

VII.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 〈부록 I〉 자료 설명
  - 〈부록 II〉 지방선거의 특성
  - 〈부록 III〉 지역별 특성과 차이
-



## 법인세 부담 연구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 ◆ 박기백·김진
- ◆ 2004. 12.
- ◆ 145p/6,000원

최근 글로벌화와 조세경쟁이 일반화되면서, 법인과 관련된 합리적인 조세 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또는 효율성을 알려 주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명목세율, 조세부담률, 실효세율(평균,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우리나라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외국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법인의 소득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세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큰 원인은 세무조정이나 손실공제 이연 기간, 각종 조세감면 등이 외국법인에 비해 불리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정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시자료를 사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할 때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자료 외에 개별 법인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의 평균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였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세청 자료와 기업의 재무자료를 융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

하는 것이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자료는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포함되는 범위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이며 사용연도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조업 등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 즉 경제적 이익의 기준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세 가치를 사용하였다. 세액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법인세 등에 대한 자료와 1999년부터 사용된 법인세 비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세액에는 법인세 이외에 주민세 등도 포함된다.

전체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업별 평균세율(세금/소득)에 외형 구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조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91년의 약 22% 수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지속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약간 증가하여 2003년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1년의 약 17% 수준에서 1995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약 18%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조세부담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기업의 평균세율의 중간값 및 평균자료를 사용하였고, 비중 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기업은 제외된 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계산결과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중간값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기업 모두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약 2%p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 1996년까지는 3%p 또는 그 이상이었으며,

이후 2000년에 6%p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5%p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율 격차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의 영향도 있지만 이중 세율구조로 인하여 대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 실효세율의 계산의 경우 산업별 비중 조정은 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자료를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 및 순이익 대비 25~28%의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내의 업종간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은 세부담이 높은 반면 전자부품업종의 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간의 세부담 격차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중반에는 10%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약 4~6%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간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G7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점별로 5~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는 대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평균유효세율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7 국가의 경우에, 영업이익 기준하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평균유효법인세율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으로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하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감가상각과 인건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감가상각비가 다소 하락한 반면 인건비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지와는 달리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지가 1990년대 초반 -2.2%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출액 대비 -0.7%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상장기업의 영업외수지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이자비용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의 하락은 약 2% 수준으로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영업외수지 개선의 대부분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을 보면 1997년 이전까지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영업이익 대비 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자산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 등은 세부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세율의 분석결과에서는 세부담이 기업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세법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변동성을 줄이려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술개발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모두 OLS와 Fixed Effects 모형에서 유효세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억 미만 더미에 대한 계수는 강한 음수로 나타나고 있어 세율이 높아 세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많이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조정하는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목 차

I. 서 론

II. 법인세 현황

1. 법인세제
2. 법인세 세수

III. 세부담 측정 방법

1.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2. 평균실효세율
3. 한계실효세율
4. 기타 측정방법

IV. 세부담 측정 - 거시자료

1. 조세부담률
2. 국세통계 자료
3. 국민계정 자료
4. 외국과의 비교

V. 세부담 측정 - 미시자료

1. 측정방법
  2. 자 료
  3. 평균실효세율 - 납부액 기준
  4. 평균실효세율 - 이연법인세 기준
  5. 평균실효세율 - 5년 평균
-

- 6. 외국과의 비교
- 7. 기업수지 변화 요인

VI.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 1. 평균실효세율
- 2. 세부담 조정

VII.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부록 1〉 업태, 외형 기준 법인 비중
  - 〈부록 2〉 영업이익 기준 소득별 법인세율
  - 〈부록 3〉 전체기업(금융업포함)의 법인세율 평균값 추이
  - 〈부록 4〉 법인세율 5년 평균의 중간값 추이
  - 〈부록 5〉 납부액 기준 법인세율의 기업 규모별 추이  
(평균값 기준)
  - 〈부록 6〉 산업별, 업종별 법인세 부담 추이
-



##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I): 고령화 대응 조세·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 최준욱·전병목·김우철
- ◆ 2004. 12.
- ◆ 140p/6,000원

기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금과세체계가 TEE방식에서 EET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개인의 세부담과 재정수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제II장에서는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러한 맥락에서의 연금과세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연금과세제도를 소개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이 현재의 세수 및 개인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IV장에서는 가상패널을 통해 개인별 평생소득을 추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제V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정된 평생소득을 이용하여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이 향후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금과세체계가 EET방식으로 개편되어 공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면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세수감소의 정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세수감소 규모는 2002년에 1조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세 감소의 정도는 2002년 근로소득세 세수 대비 약 13.3% 정도 되는 규모이며, 총 소득세 감소는 전체 2002년 소득세 세수의 약 7.8% 정도 된다.

향후 소득세 과세구간 및 연금소득세 공제액 등이 임금증가율(또는 소득증

가율)에 연동하여 변화된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이 개인의 미래 세 부담 및 평생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현재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지만, 미래의 연금소득은 매우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평생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은 모든 소득수준에서 평생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근로자 중위 소득 정도에서는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고 연금소득세 부담도 0이거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평생 세 부담의 변화도 미미하다. 평생 세 부담의 감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연소득이 약 2,4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다.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상패널을 통해 근로자의 평생소득흐름 및 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각 시점에서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금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 세수는 매년 약 1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금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즉각적으로 감소하지만, 연금소득세 수입의 증가는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 즉 향후 상당기간 동안에는 재정수입에서는 단지 근로소득세 세수의 감소만 나타날 뿐, 연금소득세 세수는 미미한 수준이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연금소득세 세수는 근로소득세 감소분의 일부만을 보전할 수 있을 뿐이다. 연금과세체계 개편에서의 이행과정 효과가 사라지고 연금소득으로부터의 세수가 안정화되는 2050년을 보더라도, 연금소득세 세수는 근로소득세 감소분의 절반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은 순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국민연금 기여금의 공제 허용으로 인한 세수손실의 현가와 연금급여 과세를 통한 추가세수 현가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순재정부담을 구하면, 그 규모는 2002년에 이들에 해당되는 세수의 약 8.4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의 대상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에 국한할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재정수입 효과는 정확히 추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부터의 근로소득세 수입이 전체 근로소득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이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 감소는 GDP 대비 0.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연금소득세 세수가 안정화되는 2050년에도 이들에 대한 연금소득세 세수는 그 절반 이하가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부터의 연금소득세 세수를 감안하더라도, 연금소득세 세수가 GDP의 0.1%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수입 및 지출의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연금소득세 세수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측면의 장기예측에 있어서는 가정을 일부만 변화시키더라도, 재정지출 규모가 몇 % 정도는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장기예측에 있어,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세수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가정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오차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표준소득이나 소득세 과세구간, 공제액 등은 명목임금(또는 일인당 소득)에 연동되어 변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연금과세는 물론이고 소득세가 현행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세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 변화에 관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는 이러한 가능성은 감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노후소득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도 근로소득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그리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소득의 존재는 연금소득세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총액으로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해 세수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소득수준이 면세점 근처가 되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있는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평생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가상패널을 구성하고 개인의 평생소득흐름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우선 대우패널(KHPS)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연령별·소득수준별 소득변화 확률을 추정하였으며, 개인의 일생소득경로는 이러한 확률구조를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평생소득의 추정에 있어 실업, 교육을 통한 급여 상승 등 개인소득의 변환요인을 확률적으로 고려한 방법론(stochastic approach)이며, 이는 평균적인 개인의 소득경로를 따라 평생소득을 추정하는 기존의 결정론적인 방법론(deterministic approach)보다 더 유연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일생소득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상당한 계산부담이 초래되는 것인바, 이러한 접근법이 어떠한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치를 제시하였다. 만약 개인의 일생소득경로를 고려한 방법론과 기존의 단순화된 방법론들 간에 실질적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단순한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횡단면 자료에서의 연령별 임금분포를 이용하여 평생소득 흐름을 구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에서의 소득 및 세수가 작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상대소득 수준이 변하지 않는 단순한 가정을 택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소득 및 세수 추정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방법론이 미래의 소득 및 세수의 추정에 있어, 과소추정 또는 과대추정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평생소득의 추정에 있어 좀 더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변화 가능성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 차

I. 서 론

II. 고령화와 연금과세

1. 고령화의 재정영향과 연금과세제도
2.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
3. 외국의 연금과세제도

III. 연금과세체계 개편의 영향

1. 현재의 세부담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2. 연금소득세 부담 수준
3. 평생 세부담에의 영향 : 단순 가정하의 시산

IV. 가상패널을 이용한 평생소득의 추정

1. 개요 및 자료의 설명
2. 상대적 소득순위 변이 과정
3. 일생소득 경로의 가상패널 계산

V. 연금과세체계 개편의 재정수입 효과

1. 추정방법 개요
2. 기본가정 및 분석자료의 구성
3. 분석결과(1) : 일인당 GDP 증가율 시나리오
4. 분석결과(2) : 평균임금 증가율 시나리오
5.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



##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 ◆ 김형준·현진권
- ◆ 2004. 12.
- ◆ 126p/6,000원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은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세무행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세무조사제도이다.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가 어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과세정보를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세무조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신고하지 않은 세원을 찾아내어 이 세원에 대해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하려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유인을 제거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 등의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경제적인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세무조사제도는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추가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믿음을 주어 납세자들이 자신의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하려는 경제적인 유인을 제거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려는 데 그 근

본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세무조사제도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조사의 조사비용이 높아 세무조사를 자주 실시할수록 납세자들은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가산세율이 커질수록 성실 신고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납세자들의 경제적인 유인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비율을 살펴보면서 2000년 이후 모든 세목에서 조사비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비용의 감소 폭이 세목마다 또는 같은 세목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비용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2000년도 이후에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의 사실은 다소 의외로 보이기도 한다.

제III장과 제IV장의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탈세의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쉽게 탈세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를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소득과약률이 증가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세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최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론은 소득 과약률의 증가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조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비용이나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비용을 정확하게 공개하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의 실제 조사비용이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결론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본 실험에서 확인한 바는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리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맺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보다 많은 경우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 ◆ 목 차

### I. 서 론

### II.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

1.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
2.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실적
3. 세무조사의 조사실적에 대한 평가: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III. 세무조사의 기본 모형

1.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경우
2.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 IV.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납세자가 있는 경제로의 모형의 확장

1. 기본 모형의 확장
2. 의회와 세무당국 사이의 정보의 문제

### V.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통한

분석

1. 실험에 대한 설명
2. 실험의 결과

VI.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연구보고서 04-11



##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 ◆ 노 영 훈
- ◆ 2004. 12.
- ◆ 131p/6,000원

### I. 연구배경

부동산보유세 강화정책은 그 자체 또는 거래과세 완화정책과 함께 과거 수십년간 역대 정부의 주요 조세정책과제로서 늘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급등이 있을 때마다 수요자의 투기적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시각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인상을 통해 자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그 실천의 정도는 이에 못미쳤다. 그러나 우리의 보유세제는 영미계 이론모형의 틀과는 매우 상이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입수도 불가능해서,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논의는 부동산보유세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보유세의 근간인 종합토지세에 관한 3개 연도 미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토지관련 세제들이 지가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 시계열자료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도입목적으로 명시된 ‘토지소유분포의 개선’ 효과와 ‘지가안정’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마침 정부는 2005년부터 중

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재산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입법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15년간 시행된 종합토지세의 시행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확인하여 향후 부동산보유세 개편의 구체적 방안 마련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II. 종합토지세의 토지소유구조 변화효과

토지자산 소유분포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개인 모집단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토지과표 기준으로 1993년, 1996년, 2003년의 토지소유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654('93) → 0.671('96) → 0.650('03)으로 변화하여 1996년에 다소 증가한 토지소유불평등도가 2003년에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3~1996년 기간은 평탄한 지가안정기로서 1996년도 토지과표의 100% 공시지가 전환을 위해 직전 2년간 과표현실화율을 급등시켰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표 기준으로 토지편중도를 완화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1996~2003년의 기간은 지가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저점(trough)에 도달한 후 2003년 초까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과표는 2000년과 2003년에만 인상되고 대체로 과표현실화율이 30% 초반에 머물렀던 시기로 여러 가지 경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때이다. 종토세 개별물건 과세자료를 개인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확인번호로 집계하면 해당 3개 연도에 각각 총 840만건, 959만건, 1,228만건에 달하여 처음 3년간은 119만명, 그리고 나중 7년간은 269만명의 종토세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토세 납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명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토지가액이나 면적 기준으로 집계한 한 사회의 실질적인 토지소유분배가 보다 공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가 없다.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과 종토세 과세대상면적이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토지소유자 수의 증가는 대부분 토지의 분필이나 주택공급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특히 1996~2003년 기간중 종토세

최저 과표구간 내에 속한 토지소유자들 중 공동주택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36.5%에서 46%로 거의 10%p 증가하였으며 최저 과표구간 계층에서 토지소유자가 188만명이나 증가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동 기간 중 분양된 아파트의 신규취득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2003년의 경우 1996년에 비해 토지소유자 양 극단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그 중간 계층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토지소유집중도는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과 2003년 양 연도에서 모두 발견되는 723만여명 납세자의 토지소유분포를 1996년을 기준(base)으로 하여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면적은 줄고 필지수는 늘었지만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의 상승으로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가액과 과표액이 증가하여 세부담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종토세가 개인의 토지소유에 미치는 효과는 설혹 동일인의 두 시점 간 토지소유량(면적, 가액, 필지수 등) 및 토지소유구성(위치, 용도 등) 변화를 원시자료(micro raw data)를 통해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토지세만의 효과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현재의 종합토지세 구조 내에서 과표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던 1990년대 전반기의 토지보유세 강화정책의 시행경험은 정책당국이 의도했던 소유구조 형평화라는 정책목적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용용도별 차등과세를 하는 종합토지세는 경제인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왜곡적 조세(distortionary tax)이다. 하지만 저과표계층에 속하는 납세자의 경우 절대적인 세부담액이 높지 않아서 토지소유 구성내용을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고액 납세자의 경우 인별합산 및 누진세율구조의 영향으로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과세대상 토지소유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 최고 과표구간인 50억원 초과 계층에서는 토지소유면적이 40% 가까이 줄어든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종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및 등록세·취득세까지도 고려한 동태적인 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토지소유 정도가 낮은 가족구성원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토지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절세방법이 존재했었고 이를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활용했을 수 있다.

한편,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인 1975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 및 토지관련 조세들이 우리나라의 지가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벡터자기상관(VAR) 모형 내에서 탈이론적(atheoretic)으로 살펴보면, 보유과세의 경우 충격이 가해진 직후부터 바로 지가변동을 하락 효과를 보이며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큰 편이었다. 2년 이후에는 점차 그 효과가 줄기 시작하지만 8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종합토지세 시행의 경험들

토지소유가액을 인별로 합산한 후 이용용도별 3개 유형으로 차등과세하는 조부유세적 성격의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운영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주요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보유세 강화정책은 종토세 과표현실화율 제고 (및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누진세율 과표구간의 상하한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 및 과표 인상시 과표구간이동(bracket creep)에 따른 세액급등효과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종토세의 전체 평균세율은 0.12~0.14%로 대체로 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 과표구간의 실효세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최고 과표구간은 그 해당인원도 적으면서 실효세율이 1.25%로 이미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한계법정세율을 두 자릿수 이상의 %로 설계하지 않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셋째, 저과표계층에서 고과표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의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종합합산대상토지를 보면, 전체 과표현실화율은 36.05%이고 저과표계층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과표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4.8%로 낮아지는데, 1996년 이후에는 계층별 편차가 축소되었다.

넷째,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개인 및 법인 등의 실효세율은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과표현실화율도 높았다. 법인 등을 포함한 전체 납세자가 소유한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실효세율과 개인의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실효세율 격차는 상위 과표구간으로 갈수록 커져서 토지를 외연적(extensively)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예, 유통업 등)의 업무용 토지 소유 법인사업자들은 과세구조상 실효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다.

다섯째, 종합토지세의 실효세부담이 그리 높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인별 합산 및 급격한 누진세율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토지과세 평가(valuation)의 정확성에 대한 과세당국의 확신이 낮았고 납세자의 납부세액 확보(liquidity)의 애로에 따른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낮은 과표현실화율 정책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여섯째, 각 연도마다 (토지)과표현실화 달성 목표치를 결정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과표현실화율을 일정 %p씩 인상시켜 수년 뒤 과표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몇 %가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분모인 공시지가나 市價가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체된 것인데, 이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되는 것이지 정책당국의 의지대로 가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목 차

### I. 서 론

#### II. 토지세의 유형별 분류와 경제적 효과

1. 부지가치에 대한 과세
2. 나대지에 대한 과세
3. 지가상승에 대한 과세
4. 토지에 대한 이전과세

5. 소결 : 토지정책수단으로서의 토지세

III. 종합토지세의 현황과 문제점

1. 종합토지세의 과세체계
2. 종합토지세의 성격: 그 특징적 사실들(stylized facts)
3. 종토세 과세표준 산정절차
4. 종합토지세의 세원분포
5.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의 문제
6. 종합토지세의 세부담 수준

IV. 종합토지세의 토지소유분포의 변화효과

1. 개인의 토지소유집중도
2.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설명
3. 1996~2003년간 종토세 개인납세자의 토지소유내역 변화
4. 1993~1996~2003년 횡단면 토지소유 집중도의 변화

V. 토지세의 자가안정효과

1. 자료의 설명
2. 안정성 및 공적분 검정
3. 인과관계 검정
4. 벡터자기상관(VAR) 모형의 추정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부록 II

---

# 정책 보고서

정책보고서 04-01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정비

- ◆ 흥 범 교
- ◆ 2004. 12.
- ◆ 165p/7,000원

### I. 주요 내용

#### 1. 다국적 금융회사와 국제금융소득의 귀속

1980년대 이래 경제 개방과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국제금융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다국적 금융회사들은 그들의 자본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의 금융시장에서 초과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를 커버하는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다국적 금융회사의 존재를 세계 각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각 거래거점별로 어떻게 이를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2. OECD의 논의와 정책과제

따라서 OECD에서는 제6작업반에서 이 문제를 크게 4부로 나누어 논의하

고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른 소득의 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주로 다루고, 제2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은행의 국제영업에 따른 소득배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24시간 베이스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한 소득의 분배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보험분야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부의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 및 유가증권의 24시간 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4시간 글로벌 트레이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거래모델(integrated trading model)은 각 금융허브에서 책임을 지고 거래를 하며, 다음 시간대의 허브로 거래의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이고, 중앙집중형 관리모델(centralized product management model)은 한 거점에서 전세계의 글로벌 트레이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물론 판매나 마케팅은 세계 각 처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에서 이루어진다. 분리기업모델(separate enterprise model)은 각 거래거점이 독립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며, 상호거래도 이루어진다. 물론 당해 금융그룹의 중앙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거래제한기준을 설정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각 거래거점이 자유로이 거래한다.

OECD에서는 분리기업모델이나 중앙집중형 관리모델에서는 소득의 귀속에 있어 이전가격세제의 전통적인 가격기준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통합거래모델에서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분할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거래의 고정사업장 개념과 관련하여 기능분석 및 실무분석을 통하여 자본과 인적기능(people function)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이에 따라 각 거래거점에 소득을 분할 귀속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논의를 바탕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국제금융거래 소득 과세의 정책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고정사업장의 개념이다. 고정사업장은 국제조세에 있어 원천지 과세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OECD 모델 조약이나 이전가격과세 지침 등에서 매우 중요

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복잡한 개념으로 남아 있고, 전자상거래나 금융서비스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 형태가 등장하면 이들 거래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소득 귀속 문제이다. OECD에서는 종속대리인 기업을 주인(principal)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대리인(agent)으로 보아 대리인으로서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다국적 금융기업들은 서비스 수수료의 지급으로 종속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안이다.

셋째, 기존에 규범화되어 있는 이전가격세제에 있어 정상가격을 정확하게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나마 정상가격대만을 도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상가격대 안에서 '자본'과 '인적기능'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넷째, 국제금융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금융그룹 내부의 위험전가거래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이다. 내부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닌 경우 사후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과세목적상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ECD에서는 이러한 그룹 내부의 위험전가거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면, 금융계에서는 현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이익분할법이 사용될 경우, 손실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특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손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 자국에게 불리하도록 손실을 자국에 위치한 지점이나 자회사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많은 나라들이 손실의 배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

끝으로 그동안 규범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독립기업간 원칙이 실제 적용에 있어 노정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세제로서 단일기업과세제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 물론 OECD의 공식입장은 독립

기업간 원칙에 근거한 이전가격세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통합을 이룩한 유럽에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3.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현재와 같은 골격의 이전가격세제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국제거래에서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super royalty 조항(미국세법 제482조)을 도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대와의 타협의 산물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비교이익법 등 비전통적인 방법을 포함한 확장된 의미의 독립가격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방법들은 사실상 단일기업과세제도와 유사한 측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단일기업과세제도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연방정부 형태의 국가에서 각 주간의 거래에 있어 적용되는 것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단일기업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단일기업으로 판정이 되면, 그 단일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기여를 하였고, 각 거래거점은 어느 만큼 그러한 요소들을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게 된다.

OECD 회원국이 대부분 유럽국가인 것을 고려한다면 다소 역설적일 수 있으나, OECD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역내에서의 기업통합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얻어가고 있다. 물론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실시에도 위에서 언급한 판정기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적어도 유럽에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가시적인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 II. 정책시사점

OECD의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24시간 거래에서 얻는 국제금융소득의 배분에 있어 자본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 귀속을 위한 기능분석을 행함에 있어 판매나 마케팅 기능보다는 트레이딩과 위험관리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투자은행들은 자본과 트레이딩/위험관리를 통하여 초과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이며 동 시스템하에서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집중형 관리 모델의 본부를 설정할 입지가 되지 못하며, 통합거래모델에서도 24시간 거래의 거점으로서 뉴욕, 런던, 홍콩, 동경 등과 같은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세할 소득이 별로 생기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OECD의 논의가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논의 결과가 향후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 방향의 귀결은 우리와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의 관련 법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선진국의 입법사례와 OECD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거래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결국 사안별로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접근하는 이해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법이 보다 정교하지 못함에서 오는 적용의 유연성은 과세당국의 몫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 확대되어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조세관련 법령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정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종속대리인 PE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와 같은 것은 국제적 대형 투자 은행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현재의 OECD 제안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을 잘 모니터링하고 현재의 방향이 유지되도록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소득 귀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새로운 모델들, 내부 위험전가 거래의 처리방안, 손실의 배분 메커니즘 등의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국제적인 세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 하겠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가격원칙을 이용한 이전가격세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수십개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금융그룹이 자본의 배분을 위하여 적어도 2~3개의 배분 시스템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나라마다 그 나라의 세법에 맞춰 조금씩 달리 변형하여 적용해야 한다면 납세순응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다국적 금융그룹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러한 방법이 일관성 있게 사용된다면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유럽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를 위하여 단일기업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단일기업으로의 판정, 결정 요소의 선택, 가중치의 결정 등 실무적인 문제부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의 포기라는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어 단기간 안에 국제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제 금융거래 유형을 고려하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단일기업과세제도에서 채택될 요소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국제조세는 ‘협상’인만큼 협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금융 역량의 내실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세제의 공통적인 전형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금융거래와 다국적 금융회사
  1. 국제금융거래 현황
  2. 국내의 금융회사들의 영업 실태
  3.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운영
- III. 국제금융소득과세에 대한 OECD의 논의
  1. 배경
  2. 국제금융거래
  3.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전가격
  4. 고정사업장과 이전가격문제
- IV. 국제금융거래 소득과세의 정책과제
  1. 고정사업장의 개념
  2.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소득 귀속
  3. 소득의 귀속
  4. 내부 위험전가 거래의 처리
  5. 손실의 배분
  6. 독립기업간 원칙의 적용과 단일기업과세제도
- V. 이전가격세제의 전망
  1. 독립기업 원칙의 의미

2.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역사
3. 대안으로서의 단일기업과세제도

#### VI. 우리나라의 현황과 제도 정비

1.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제도
2. 기타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현황
3. 우리나라의 관련 과세규정에 대한 평가
4. 시사점

#### VII. 결 론

#### 참고문헌

〈부록〉 이전가격관련 OECD 모델 조약 규정

---

정책보고서 04-02



##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II)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 박형수·최준욱·김진
- ◆ 2004. 12.
- ◆ 213p/8,000원

###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은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일부로서 처음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수립된 바 있었으나, 2004년 10월 정부가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2005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기재정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중전의 계획들과는 달리 경제 및 재정전망 이외에 중기재정 총량목표가 보다 명확히 설정되고, 각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된 세출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기재정계획과 차이를 보인다.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중기재정제도는 재정건전성 유지 및 지출효율성 제고 등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과거 수년간의 경험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되짚어 보면서, 향후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이 보다 효과적인 재정정책 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다.

## 2. 선진국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OECD 국가들에 대해 동 계획을 작성 또는 제도를 강화하기 전·후의 재정지표들을 비교해 본 후, 재정지출 감축이 관찰된 6개 국가 중에서 추세가 명확하였던 캐나다, 스웨덴과 더불어, 재정지출이 증가한 영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이들 3개 국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스웨덴은 1997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향후 거시경제 전망 및 일반정부(중앙정부 + 지방정부 + 노령연금)의 세입전망에 기초하여 ‘경기변동을 감안하여 GDP의 2% 재정흑자’라는 중기 총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에 걸쳐 전체 지출규모 상한뿐 아니라 27개 지출분야의 지출상한을 책정하여 이를 준수해 오고 있다. 2000년에는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이라는 추가적인 재정목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예산여유분(budget margin)의 규모 및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은 대체적으로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재정건전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출전망을 낮게 하거나 세입전망을 높게 하여 당초 재정전망 및 목표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등 중기재정계획의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이 당초 전망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상한보다는 낮게 유지하기보다 예산여유분을 사용하거나 재정수지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 목표의 달성 또는 지출상한 준수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정책수단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예산여유분의 규모와 그 사용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운용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출상한으로 인해 재정지출을 확대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확대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또는 지출한도 설정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외 자금이나 지급보증을 이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0개의 ‘예산분야’(resources envelopes)에 대한 지출한도 책정을 골자로 하는 ‘정책지출관리제도’(PEMS)가 1979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자기 부채 내의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재원을 재배분 하려는 시도가 다른 장관들에게 이용되어 타 부처의 프로그램에 재원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한 장관들이 재원 재배분보다 중앙예비비(central reserve)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선호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이 무력화되어, 1989년에는 동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에 도입 시행된 ‘지출관리제도’(EMS)는 계획기간을 당해 회계연도와 차기 회계연도의 2개년으로 줄여 전체 지출의 상한을 책정하고, 성과주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비용 증가분에 대한 재원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으로부터 충당하게 하는 재원 재배분을 적극 유도하였다. 한편, 기존 예비비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법정사업의 예기치 못한 비용증가에만 사용하는 등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전부를 정부부채 감소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신중한 가정을 바탕으로 세입전망을 보수적으로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를 이루어낸 캐나다 재정은 재정운용의 원칙들이 비교적 잘 준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정된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캐나다의 성공적인 사례는 재정위기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재정개혁을 향한 강한 동기를 유발시켰고 예산담당부서인 재무부가 총리의 강력한 지지하에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영국에 대해서는 1998년에 도입한 새로운 중기재정제도가 이후 재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계획수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재량적 지출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증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예산편성에서 top-down 방식이 정착된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을 강화하는 것은 예산당국이 각 부처 예산에 대해서 중기적인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에 따라, 여건이 변화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재정자원을 감축하여 배정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체 재정지출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향후 1~2년 동안은 계획대로 이행되었지만, 계획 수립 후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재정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재정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중에는 재량적 지출의 비중이 영국에 비해 훨씬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행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또는 정부-국회간의 역학관계로 인해 이러한 위험성이 영국에서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재정계획 및 top-down 예산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의 조정권한은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당국의 조정권한이 너무 자주 사용되는 경우, 중기재정계획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으므로,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이러한 사후적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분야별 지출에 할당되지 않은 일정한 완충·조정재원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우리나라의 정책적 이슈

성공적인 중기재정계획의 첫 출발점은 적절한 계획의 수립인데, 이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최근 사례는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는 것이 중기재정제도 운용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캐나다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정지출의 통제 및 재정적자의 방지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기재정의 목표

가 단지 지출의 통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기보다는 가급적 중립적인 전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자 하는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망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부는 계획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스스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상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기간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캐나다를 보면, 계획의 시계를 짧게 함으로써 구속력을 강화하여 재정지출 통제의 효과성을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을 단기간에 국한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선진국들에 비해 정부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보다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은 약 5년 정도로 비교적 긴 기간에 대해 수립하되,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는 구속력이 강한 것으로, 3년째에는 구속력이 다소 약한 정도로 하는 식으로 연차별로 그 구속력이나 성격을 다소 달리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기재정계획의 총량목표를 재정지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재정수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 증가 중에서 재정적자 이외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과 같은 금융성 채무의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지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총량목표로 하거나, 또는 오히려 재정지출 총액을 총량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융자를 포함한 경우와 이를 제외한 경우의 수치 모두를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채무에 대한 목표도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금융성 채무를 별도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라에서는 재정 총량목표를 계획기간의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정 선진국들처럼 계획기간 동안의 평균치, 또는 수년간 동안의 이동평균치(moving average)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완충·조정재원의 책정 및 사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거시경제 전망이나 이에 기초한 세입 및 세출 전망이 실적과 차이가 나게 마련이며, 계획 수립당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던 세입 및 세출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의 전망오차나 소규모의 세입 및 세출 변경요인에 대해서는 완충 및 조정역할을 하는 세출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완충·조정재원을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이를 어떠한 경우에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규율을 사전에 수립하고 적절한 관행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 또는 중기재정계획의 구속력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해외사례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심층분석한 3개 국가는 물론이고 중기재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중기재정계획을 법적 구속력이 약한 정부의 계획으로 시작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한편, 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여 이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외에도 중기재정계획이 행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방식은 국무위원간의 느슨한 합의 형태로 되어 있어 구속력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의 설정 및 한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4. 완충·조정재원의 규모 시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기재정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출한도 및 재정수지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완충·조정재원’(safety margin)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EU국가들을 대상으로 cyclical safety margin의 규모를 시산했던 방법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cyclical safety margin, safety margin 및 budget margin의 규모는 GDP갭률이 -0.75% 정도인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실시하였던 재정확장 정책의 강도를 감안한 GDP탄력성을 적용하면 각각 GDP의 0.16%, 0.23% 및 0.75%로, 단순하게 평균적인 GDP탄력성을 적용하면 각각 0.15%, 0.14%, 0.28%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이러한 safety margin 및 budget margin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1989년 캐나다의 PEMS 폐지를 야기하였던 지출부처들이 budget margin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출항목을 여유 있게 편성하는 등 암묵적인 방법으로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많은 OECD국가들에서처럼 총지출 한도 설정시 budget margin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작성연도에 가까운 기간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작게 하고 계획기간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다소 규모를 늘려 잡아야 할 것이며, 그 규모는 본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향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규모를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사업들의 규모, 특히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우리만큼 변화무쌍한 한국적 경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budget margin을 명시적으로 두되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한국적 예산편성 풍토에 맞는 운용방법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스웨덴과 같이 한 번 budget margin을 설정해 놓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margin을 늘려주지 않으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재정수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이를 보

충해 농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budget margin을 설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캐나다의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

◆ 목 차

I. 서론

II. 선진국의 중기재정 운용사례와 시사점

1. OECD 국가
2. 스웨덴
3. 캐나다
4. 영국

III.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 수립 추이
2. 20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요 정책 이슈

IV. 완충·조정재원의 필요성과 규모 시산

1. 문제 제기
2. 완충·조정재원 규모에 대한 기존 연구
3. 경제상황에 따른 재정수지 변동
4. 우리나라의 완충·조정재원 규모 시산

V. 결론

참고문헌

- 〈부록 I〉 OECD 국가들의 예산 및 중기재정제도  
〈부록 II〉 GDP갭률 수준과 재정수지 및 재정지출
-

정책보고서 04-03



##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 ◆ 정재호 · 류덕현
- ◆ 2004. 12.
- ◆ 158p/7,000원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관세율 변화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우선, 산업구조와 실효관세율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세율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율과 산업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 정책이 분명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 실효관세율은 무역특화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명목관세율은 수입의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도 정책적으로 관세율 구조를 조정할 때 실효관세율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향후에도 관세율 구조를 개편할 때 실효관세율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효관세율 수준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곧 정책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실효관세율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는 WTO 체제에서 특히 ITA 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추진된 최종재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중간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가 필

요하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재에 대한 선별 작업을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는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관세 보호는 자원 재배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책시사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향후 관세율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며,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중간재 선별 연구는 향후 개별 산업별 세부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로 본고의 연구영역을 넘는 부분이다. 특히,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핵심 부품 및 소재 산업 연구와 함께 업체별 실태 조사도 함께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HSK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학·연 협동을 통한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별적인 중간재 관세율 조정을 통해 역관세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한 산업의 역관세 조정은 새로운 부문에 대해 역관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역관세 해소를 위해 중간재 부문에 대해 관세율을 낮출 경우 해당 중간재 산업의 보호수준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제품 산업과 중간재 산업 중 어느 산업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정책적 판단과 중간재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세율 불균형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야 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주요 산업에 대한 역관세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경우 콩류, 유지작물 등의 관세율을 낮출 경우 역

관세 현상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콩류와 유지작물 중 대두, 녹두, 참깨 등은 시장접근물량 관리 품목으로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역관세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고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례가 된다.

또한 나프타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원유의 관세율 수준은 나프타에서 나타나는 역관세 해소보다는 더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 제조업에서는 개별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산업의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중간재 산업의 관세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중간재에 대해 보호를 할 것이고 어느 중간재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처럼 해당 산업의 중간재가 여러 산업에 걸쳐 폭 넓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재보다는 보다 많은 중간재 산업의 보호가 더 나은 정책대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집적회로 산업처럼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도 무역특화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의 적극 활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최종재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선박의 역관세 문제는 역관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선박제조시설은 보세구역이고 대부분의 선박이 수출됨으로써 관세유예와 사후 환급에 의해 사실상 완성품 업체에겐 관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에서 우월한 특정 국내부품을 제외하고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추어 보호수준을 낮추는 것은 선박의 역관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해당 중간재 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역관세 해소 혹은 실효관세율 개선을 위해 개별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중간재에 적절한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중심관세율 체계와 상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정책당

국에서 개별 산업별, 더 나아가 개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인 최적의 관세율을 찾아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산업간 연관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최적 관세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중심관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중간재 관세율에 주목하려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와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효관세율 개선과 역관세 해소 등 관세율 정책이 추구하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세율 정책의 시행 시기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여부가 관가름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지금 역관세 시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체계를 조정할 경우 향후 DDA 협상결과에 의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다시 한번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 없이 산업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저해하여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협상 이후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의 개편을 시도할 때 역관세 품목들 등 실효관세율 수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하며, 다만, 현재 산업별로 역관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등의 탄력관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탄력관세 제도의 취지가 바로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에 앞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산업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취약산업의 보호보다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8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향해 관세율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관세율 정책은 두 차례에 걸친 관세인하예시제를 통해 산업 중심적에서 산업 중립적인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을 중심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적

인 여건에 의해 관세율 인하 및 무세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섬유 및 가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업종의 하락과 전기 및 전자기기 등 조립가공 업종의 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재 업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조립가공 업종은 상승하였다. 한편, 수출에서도 조립가공 제품의 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재 제품의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크게 감소하여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관세율 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하면, 1997년에 추진한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 인상정책은 이들 산업을 수입 측면에서는 보호하였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기보다는 이들 산업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평가된다.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율 정책상의 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관세율 정책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일명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으로 정해진 관세율 수준에서 어느 한 산업을 지원함(관세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자원을 특정 산업에 묶어 두거나 혹은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는 자원이 덜 배분되게 된다. 따라서 취약산업을 보호하여 이들 산업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관세율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지원할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사양산업보호는 급격한 자유화의 폐해를 줄이고 정치적인 지지를 쉽게 얻기 때문에 편리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자원과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에서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사양산업에 대한 탄력관세, 반덤핑관세 혹은 관세환급 등의 정책수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정책수단은 필수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 산업에 대한 선별적 육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본고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특히, 기본관세율 정책이 지향할 바에 대한 논의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정책적 판단과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개별 국가

별로 FTA가 체결되고, FTA는 특성상 모든 품목을 일시에 무세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철폐 예외품목,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 그리고 즉시 관세철폐 품목 등으로 나누어 철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해당 국가별로 차등관세를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런 품목을 선별하여 관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국가별로 품목별 산업별 차등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즉,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예외를 적용하고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으로 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중간재 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염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FTA 뿐만 아니라 FTA 대상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어떤 품목과 산업에 대해 관세 보호가 필요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향후 기본관세율 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 목 차

### I. 서 론

### II.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현황 및 특징

1.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변화
2.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 및 분포 변화

### III.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1. 산출액, 부가가치 및 수출입 변화
  2. 수입의존도 변화 추이
  3. 무역특화지수 변화
  4. 정책적 시사점
-

IV.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1. 실효관세율 개념
2.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3. 역관세 문제
4. 관세율과 산업구조

V. 결 론

참고문헌

---

## 정책보고서 04-04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 ◆ 권오성·하헌구
- ◆ 2004. 12.
- ◆ 188p/8,000원

본 보고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물류체계 및 국가물류비 현황을 살펴보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가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물류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물류 및 조세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운송부문별 물류체계 개선 및 조세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물류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수송부문과 수송부문 외의 기타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수송부문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가 과다한 원인으로 연계수송의 미비, 도로운송의 편중적인 수송 구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수송체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연계수송(inter-modal)의 강화, 철도화차의 증차와 철도역의 CY 기지화, 인천공항의 접근성 향상과 연계교통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연계수송(inter-modal)의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인입시설의 확충, 연안운송을 위한 전용선석과 부두 CY의 확충, 상하차의 기계화 및 전산화 등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영업용 자가화물자동차의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고 영업용 화물운송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영업용 화물운송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 재계약 및 재증개·대리 제한을 개선하여야 하고, 영세하고 소규모인 화물 자동차사업의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송부문 외의 기타 부문에서 물류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보관·창고분야, 물류아웃소싱, 물류기술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관·창고분야의 물류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단지내 보관창고시설의 입주 확대, 녹지지역내 물류시설의 건폐율 상향조정, 국유지 저가 장기임대추진, 보관창고분야의 아웃소싱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보관·창고분야의 물류비를 감소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류아웃소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고, 해외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인 물류기업과 하주기업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화물 운송망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송업체와 하주기업이 수배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물류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부문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물류 및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운송부문별 물류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육상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의 시장진입제도가 2004년 4월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일반·개별·용달 화물운수사업의 업종 구분이 시장에서의 기능과 역할, 물류산업에의 기여 측면에서 더 이상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톤급에 의한 일반·개별·용달화물의 구분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화물운수업체와 개인화물운수사업자간의 구분으로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재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신설됨으로써 화물운송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화물운송 시스템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다단계 알선구조는 화물운송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불법적인 다단계 알선·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철도는 장거리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수송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물류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철도에 대한 역할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철도연장은 현재 거의 모든 노선에서 수송의 한계용량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영업연장 확장을 위해서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성상 철도는 낮은 비용으로 대량수송이 용이하며, 토지 단위당 수송 능력이 도로에 비해 높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는 단거리 소규모 수송수단으로, 철도는 장거리 대량수송수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안화물운송의 경우에는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운송시간이 길다는 것으로서, 연안화물운송의 운송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는 초고속선의 투입, 갑문밖 하역을 통한 갑문통과 시간 절감, Ro/Ro선 투입에 의한 하역시간 절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운송부문의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있어서 자동차관련 세제간의 과세기준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기준간의 불일치는 차량무게(톤)를 구분함에 있어 각 세목간의 다양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화물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과 운임하락 등으로 인해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같은 운송사업자인 버스운송사업자와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운송료 및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류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급방식 및 절차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의 사용액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제도의 도입은 관련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제도의 일몰기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경영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운송업은 물류과정에서 필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독자적 산업활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제조업과 같이 취급한다면 차고지는 일반업무용 건물부지보다는 공장용지에 가깝기 때문에 분리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철도 관련 세제 중 부산시가 부과하고 있는 컨테이너세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오늘날까지 그 폐지와 개선에 대한 요구는 줄곧 제기되고 있다. 컨테이너세는 근본적으로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출활성화를 저해하며, 부산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부산시 항만배후도로 건설비의 추가 재원은 철도수송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세에 의존하지 말고, SOC투자재원의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철도운영을 철도청이 담당하고 있어 조세 관련 현안이나 문제점이 거의 없지만 2005년에 철도공사가 출범하여 철도구조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철도관련 세제가 구성된다. 그러나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철도운영회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철도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운영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방안 등 정부의 조세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안화물선의 경우, 육로운송과는 달리 환경오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유류는 경질유 등의 에너지를 정유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경우, 조세형평성에 있어서 기타 운송수단에 확산될 우려가 있

으며, 국가재정 건전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결조건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 등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에 관련된 세제에 있어서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수준이 육상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내항선원 월급여액의 경우에 외양어선원과 외항상선원에 비해 불리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내항화물운송업의 경우 선원확보의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타 세제에 있어서 내항운송은 외항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북아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관련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연안화물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 목 차

### I. 서론

### II. 국가물류체계의 현황과 진단

1. 국가물류체계 현황
2. 물류비 구성요소 및 물류비 변화 추이
3. 운송부문 교통시설 투자현황
4. 운송부문의 물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 III. 운송부문 조세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화물자동차
2. 철 도
3. 연안화물운송업

### IV. 주요 물류선진국의 운송부문 물류정책 현황

1. 홍콩
2. 네덜란드
3. 싱가포르

V. 국가물류비 감소를 위한 운송부문 물류 및 조세체계 개선방안

1. 국가물류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2. 운송부문 물류체계의 개선방안
3. 운송부문 조세체계의 개선방안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

- ◆ 김 진 수
- ◆ 2004. 12.
- ◆ 193p/8,000원

I. 주요내용

가. 배경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소득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자에게 배당이 된 후 그 소득에 대해서 출자자단계에서 또 다시 과세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두 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즉, 법인실재설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가 완벽하게 조정되지 못하거나 조정 후 조세가 중복적이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과다

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주요국의 배당소득과세제도

주주가 개인인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전혀 조정해 주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는 1/9 gross-up 비율에 의한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해 배당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일본은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에 의해 배당소득금액의 10% 또는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째, 검토대상 국가 모두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중과세 조정방법도 국제적으로 선호되고 있지 않다. 둘째, 검토대상 국가 모두 이중과세를 완전하게 조정해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수입배당공제법에 의해 배당의 70%, 80%, 10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금과 관련된 세액공제액을 합한 소득인 면제투자소득을 소득공제하며, 독일은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일본은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수입배당금의 8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째, 검토대상 국가는 모두 이중과세 조정방법으로서 수입배당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검토대상 국가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먼저 단일 출자자를 가정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세부담률의 차이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므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이중

과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비제조업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개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낮다. 둘째,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다. 셋째, 소득세제의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데, 출자자가 출자자단계 또는 법인단계 및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의 실효세율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고서도 한동안 누진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법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낮다. 둘째,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다. 셋째, 실효세율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 II. 정책시사점

### 가.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현행 배당소득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인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출자자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의 조정이 미흡하다. 둘째,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높지 않아 누진세율구조를 통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는 현행 소득세제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 셋째,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

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넷째,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 다섯째,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배당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여섯째,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도록 하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 배당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 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출자자가 분배받은 배당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법인 전체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기업의 출자자는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부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는 그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다는 문제는 사내유보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당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팩테이션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임팩테이션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선책으로서 저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 이외에도 고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을 두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으로는 현행 임팩테이션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 대신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을 결합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희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은 지주회사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법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상당수의 저소득 출자자의 세부담률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금액을 낮출수록 세부담률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는 축소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 출자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해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미달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들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의 세부담이 누진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출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원천징수를 받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이 8%임을 감안할 때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율의 최저세율 정도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은 주가의 상승에 의해 주주가 우회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 구별 없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할 것이다.

#### ◆ 목 차

##### I. 서론

##### II. 배당소득과 조세

1. 배당소득세의 의의
2.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기존의 연구
3. 조세와 기업의 배당정책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
4. 기존의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연구방향의 설정

##### I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1. 완전통합(full integration)방법
2. 부분통합(partial integration)방법

##### IV.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1. 분석대상회사
2.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 규모 추이
3. 배당성향 추이
4. 배당률 및 배당수익률 추이
5. 주당 배당금의 증감 추이
6. 우리나라 기업 배당정책의 평가

##### V.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세제도

1. 배당소득의 범위와 내용
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변천과정
3. 현행 세법상의 배당소득과세제도

VI. 주요국의 배당소득과세제도

1. 미국의 배당소득세제
2. 영국의 배당소득세제
3. 독일의 배당소득세제
4. 일본의 배당소득세제
5.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국제비교

V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1. 단일 출자자의 경우
2. 다수 출자자(개인 출자자)의 경우
3. 다수 출자자(법인 출자자)의 경우

VIII.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1.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기본방향
3.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IX.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 정책보고서 04-06



##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 ◆ 손원익 · 정재호 · 김형준 · 김상현
- ◆ 2004. 12.
- ◆ 494p/18,000원

본 연구에서는 준조세의 정의를 규정하고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규모를 추산하여 1997년 규모와 비교한다. 또한 준조세 축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른 영향과 준조세 규모의 변화 추세 등을 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범위를 정립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를 산정하고 불필요한 준조세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광의의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축소하여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장성 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이 포함된다.

이론적 분석을 위하여 광의의 준조세를 조세성 부담금, 비조세성 부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기부금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조세성과 비조세

성 부담금을 제외한 준조세는 주로 수요와 생산함수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세성 부담금은 감소하는 한편 비조세성 부담금은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세율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률은 ① 조세에 대한 저항 ②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의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 ③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의 비율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과세대상 자원과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 부담부과 자원의 비율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좌우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효율화, 조세나 재정정책의 형평성 제고, 지출의 합리성 제고 등을 통하여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면 준조세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준조세 중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조세성 부담금의 증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부담금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조사 대상국 대부분이 우리나라처럼 부담금에 대한 활용도가 크거나 많은 종류의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전반적인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는 부담금 관리에 관한 사후관리제도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부담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는 재원에 대해 조사 대상국들은 대부분 조세를 통해 이런 재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나 싱가포르, 일본, 미국과 달리 부담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발성의 정도에 따라 각종 기부금을 구분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였다. 2003년 말을 기준으로 분야별 준조세 규모와 기부금 중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이라고 답한 금액을 합하여 준조세의 규모를 추계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약 23조 1,516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6조 9,212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이 납부한 준조세

를 손금산입함으로써 납부세액이 감면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준조세 규모이다.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준조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므로 손금산입으로 인해 세액이 감면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일 것이다. 따라서 손금산입으로 인한 세액감면 부분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총 16조 9,047억원이고 협의의 준조세 규모는 12조 3,565억원 정도이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4,781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조 9,299억원 정도이다. 또한, 준조세성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이라고 답한 것까지 합할 경우의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17조 216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12조 4,734억원이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6조 5,95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2조 468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기부금을 제외한 준조세의 연도별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00년까지 매우 완만한 증가나 감소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협의의 준조세 또한 2001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의 변화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재정지출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뚜렷한 증가나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부처별 예산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노동부이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부로 나타났다. 부처별 예산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노동부이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예산 대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I. 서 론

II. 준조세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1.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2. 준조세의 정의 및 범위
3. 준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I. 우리나라의 준조세 실태

1. 준조세의 분류
2. 부담금
3. 사회보장성 보험료
4. 기부금

IV. 주요국의 준조세 실태

1. 환경 관련 부담금
2. 개발·교통관련 부담금
3. 산업(에너지)관련 부담금
4. 주요국의 기부금

V. 준조세의 규모 및 비교

1. 준조세 규모(2003년말 기준)
2. 준조세의 변화추이

VI. 결 론

참고문헌

부록 I. 기업의 준조세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II. 정치자금 모집 등에 관한 제도

부록 III. 수입 부과금과 유사한 외국제도

부록 IV. 분야별 부담금의 협의의 준조세 포함여부

---

# 기타보고서



##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 ◆ 장 근 호
- ◆ 2004. 6.
- ◆ 624p/20,000원

### ◆ 목 차

#### 제1편 총론

##### I. 경제 및 사회환경

##### II. 조세체계

1. 미국 조세체계 연혁
2. 미국 연방세
3. 미국 지방세

##### III. 세수구조 및 세입

1. 정부 총수입 동향
2. 연방정부 수입 동향
3. 지방정부 수입 동향

#### 제2편 개별 세법

##### I. 조세절차법

1. 서론

2. 조세의 부과
3.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4.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5. 조세의 징수
6. 세무조사제도
7. 조세불복제도
8. 가산세(금)와 조세범 처벌
9. 회계방식과 과세연도
10.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II. 개인소득세

1. 서론
2. 총칙
3. 과세소득
4. 비과세소득
5. 자산소득의 과세
6. 소득세 세율과 세액결정
7. 신고와 납부
8.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9.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III. 법인세

1. 서론
  2. 총칙규정
  3. 과세소득
  4. 비과세소득
  5. 법인세 세율, 신고 및 납부
  6. 기업 매수합병 및 분할
  7. 양도소득
-

8. 파트너십(Partnership)
9. S 주식회사
10. 배당과 청산소득
11. 연결납세제도
12. 이중과세방지제도
1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IV. 소비세

1. 미국의 소비세 체제
2.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es)
3. 기타 지방정부 소비세
4. 연방정부 소비세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V. 미국의 유산 제세와 관련 소득세

1. 서언
2. 유산세(Estate tax)
3. 증여세(Gift tax)
4.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GST) Tax)
5. 유산과 유산신탁기금 소득세(Estate and Trust Income Tax)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VI. 재산세

1. 개요
2. 뉴욕시 재산세
3. 매릴랜드주 재산세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VII. 국제조세

1. 개요
-

2. 미국인 등에 대한 해외소득 과세
3. 비거주 외국인(회사)
4.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제도
5.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
6. 국제조세협약
7. 기타
8.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VIII. 결론

1. 미국의 조세체계
2. 세목별 특성
3. 중요 시사점

#### 참고문헌

---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 ◆ 박 정 수
- ◆ 2004. 6.
- ◆ 434p/15,000원

### ◆ 목 차

#### I. 서 론

1. 영국의 조세관리(tax management) 개요
2. 영국 정부의 세입현황
3. 최근 영국의 주요 세법개정 개요
4. 재정법(Finance Act): 연간세법

#### II. 영국의 평가제도

1. 평가관련 과세체계의 개요
2. 평가기구 및 조직과 운용

#### III. 소득세제도

1. 소득세제도의 개요
2. 과세소득
3. 비과세소득
4.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5. 소득세율
6. 소득세 행정 및 기타 관련 제도

7. 정책시사점

IV. 기업과세제도

1. 개인사업, 동업 또는 유한회사
2. 법인 형태인 경우
3. 정책시사점

V. 국제조세

1.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기초
2. 국제조세업무

VI. 부가가치세제도

1. 부가가치세제 개요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세 행정
4.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 비교와 정책시사점

VII. 상속세

1. 서론
2. 과세대상 및 면세
3. 상속세 행정
4. 정책시사점

VIII. 개별 소비세제도

1.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세(Aggregates levy)
  2. 주세(Alcohol tax)
  3. 항공여객세 (Air passenger duty)
  4. 에너지환경세(Climate change levy)
  5. 도박세(Betting and gambling duties)
  6. 보험 프리미엄세 (Insurance premium tax)
-

7. 쓰레기 매립세(Landfill tax)
8. 석유세(Petrol tax)
9. 담배세(Cigarette tax)
10. 자동차세(Vehicle excise duty)
11. 정책시사점

IX. 지방세제도

1. 카운슬세(Council tax)
2. 국세형식의 재산세: 비주거 레이트(Non-domestic Rate)

X. 자본이득세제도

1. 서론
2. 과세대상
3. 세율과 적용
4. 정책시사점

XI. 인지세(stamp duty)

1. 연혁
2. 세율과 과세대상
3. 인지세 과세범위와 공제
4. 정책시사점

XII. 영국의 조세절차법

1. 서론
2. 과세절차
3. 행정불복심사절차
4. 조세소송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영국 통계

---

- 〈부록 2〉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 〈부록 3〉 1967년 자본이득세 시행규칙
  - 〈부록 4〉 1988년 자본이득세법
  - 〈부록 5〉 상속세법
  - 〈부록 6〉 Schedule-Intangible Fixed Assets(2001. 11. 27)
  - 〈부록 7〉 1994년 부가가치세법
  - 〈부록 8〉 소득 및 법인세법
  - 〈부록 9〉 영국 석유 생산에 대한 과세
-



##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

- ◆ 안창남
- ◆ 2004. 6.
- ◆ 318p/13,000원

### ◆ 목 차

#### I. 총론

1. 경제 및 사회 환경 편
2. 불어권 국가연합의 현황
3. 조세체계
4. 조세 및 국가부담률
5. 세수구조 및 세수입
6. 조세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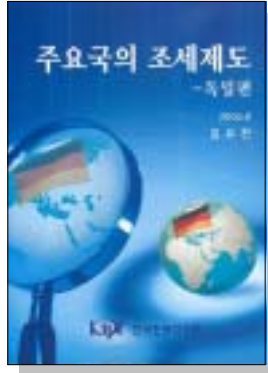
#### II. 개별세법

1. 조세절차법
2. 소득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5. 주세
6. 상속 및 증여세
7. 재산세
8. 국제조세

Ⅲ. 프랑스 세제가 우리나라 세법 및 세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



##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 ◆ 김 유 찬
- ◆ 2004. 6.
- ◆ 338p/13,000원

### ◆ 목 차

#### 제1편 총론

- I. 독일의 사회 및 경제환경
  1. 독일의 사회환경
  2. 독일의 최근의 경제상황
- II. 조세체계(국세/지방세, 직접/간접세, 일반/목적세 등)
- III. 국가할당률 및 조세부담률
- IV. 세수구조 및 세수입
  1. 전체적인 재정수입 구조
  2. 조세수입

#### 제2편 개별 세법

- I. 독일의 국세기본법(조세절차법: Abgabenordnung)
  1. 서론
  2. 조세부과의 원칙

3.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
4. 조세의 부과
5. 조세의 징수
6. 세무조사제도
7. 조세불복제도
8. 가산세와 가산금
9. 조세범처벌법
10. 기타: 구속확언(verbindliche Zusage)제도
11.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

〈부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회계감사 의무

〈부록〉 2000년도 독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부록〉 독일 국세기본법의 목차

## II. 독일의 소득세(Einkommensteuer)법

1. 서론
2. 총칙규정
3. 과세소득
4. 비과세소득
5. 소득세의 세율 및 세액결정방식
6. 신고납부 및 징수
7.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8. 원천징수제도
9.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

〈부록〉 독일 소득세법의 목차

## III. 독일의 법인세(Koerperschaftsteuer)법

1. 서론
  2. 총칙규정
  3. 과세소득
-

- 
4. 비과세소득
  5. 법인세의 세율, 발생, 신고 및 납부
  6. 기업합병과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
  7.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8.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9. 청산소득 및 청산소득과 유사하게 과세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10. 부당행위계산(transfer pricing)
  11. 연결납세제도
  12. 이중과세방지제도(법인세의 주주단계의 공제)
  13. 기타
  14.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

〈부록〉 독일 법인세법 목차

〈부록〉 주요 조문 번역문

#### IV. 독일의 소비세제도

1. 부가가치세(Umsatzsteuer)

〈부록〉 독일 부가가치세법 목차

〈부록〉 주요 조문 번역문

2. 독일의 기타 소비세제도

#### V. 독일의 상속증여세(Erbchaft-und Schenkungsteuer)법

1. 서론
  2. 총칙규정
  3. 과세등급 및 세율
  4.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규정
  5. 비과세 및 감면
  6. 신고와 납부
  7. 기타: 최근 상속증여세법의 개정 동향
  8.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
-

〈부록〉 독일 상속증여세법 목차

〈부록〉 주요 조문 번역문

VI. 독일의 재산세(Vermögensteuer)제도

1. 부동산세(Grundsteuer)

〈부록〉 부동산세법의 목차

2. 부동산취득세(Grunderwerbsteuer)

〈부록〉 부동산취득세법의 목차

3. 자동차세(Kraftfahrzeugsteuer)

VII. 독일의 국제조세제도

1. 서론: 국제조세의 체계와 법원

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국내세법의 규정

3.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관련 규범

4. 대외조세법(Aussensteuergesetz)

5. 외국세법

6. 독일이 맺은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VIII. 기타: 독일의 영업세(Gewerbesteuer)법

1. 서론

2. 과세대상 기업

3. 납세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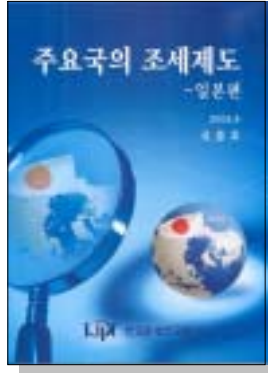
4. 과세소득

5. 영업세 계산금액의 분할

6. 납세의무의 발생, 납세신고 및 징수

참고문헌

---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

- ◆ 국 중 호
- ◆ 2004. 6.
- ◆ 430p/15,000원

### ◆ 목 차

#### I. 총 론

1. 경제사회의 구조변화
2. 일본재정의 구조변화
3. 현행 일본의 조세체계
4. 일본 주요 세목의 비중추이

#### II. 조세절차법

1. 서론
2. 납세의무와 납세기한
3. 조세의 부과
4. 납부 및 징수절차
5. 주요 세목의 법정 납기한과 납세의 유예·담보
6. 세무조사제도
7. 조세 불복심사제도
8. 가산세와 연체세·이자세
9. 조세범칙의 단속
10. 기타

11. 시사점

III. 일본의 소득세

1. 소득세의 역사개관과 부담상황
2. 납세의무자와 納稅地
3. 소득세법상의 소득분류 및 소득계산
4. 소득공제제도
5. 세율구조와 세액의 계산
6. 신고와 납부
7. 소득세액 계산의 예시
8. 정책시사점

IV. 일본의 법인세

1. 법인세의 역사개관 및 성격
2. 총칙규정
3. 법인과세의 세수추이
4. 법인과세의 세율구조
5. 법인세의 부담조정
6. 조직재편 세제
7. 충당금·준비금 및 감가상각제도
8. 일반법인 이외의 법인과세
9. 조세특별조치와 교제비과세제도
10. 기부금 세제와 압축기장
11. 신고 및 납부
12. 정책시사점

V. 일본의 소비세

1. 소비세 도입 이전의 소비과세
  2. 소비세의 창설배경
-

3. 소비세 구조와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5. 비과세거래 및 면세거래
6. 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세액공제제도
7. 소비세의 신고·납부
8. 정책시사점

#### VI. 일본의 상속세·증여세

1. 기본 구조 및 과세현황
2.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3. 과세가격의 계산과 재산평가방법
4. 공제제도 및 과세등급
5. 상속세의 계산
6. 증여세
7. 신고와 납부
8. 최근의 상속증여세 개정 동향
9. 정책시사점

#### VII. 일본의 재산과세: 고정자산세

1. 일본의 재산과세와 고정자산세 개요
2. 총칙규정
3. 재산가치의 평가
4. 세율 및 세액계산
5. 비과세 및 감면
6. 신고와 납부
7. 시사점

#### VIII. 일본의 국제조세제도

1. 과세권의 경합과 국제조세
-

2. 일본의 국제조세제도 개략
3.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외국세액 공제제도
4.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5. 이전가격세제
6. 과소자본세제
7. 외국자회사 합산세제: 조세피난처대응세제
8. 조세조약 및 현황
9.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IX. 일본의 기타 조세

1. 기타 조세의 종류
2. 기타국세
3. 고정자산세 이외의 지방세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X. 시사점 정리

1. 조세절차법
2. 개인소득과세
3. 법인소득과세
4. 소비세(부가가치세)
5. 상속증여세
6. 자산과세
7. 국제조세
8. 기타조세

참고문헌

---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전택승
- ◆ 2004. 8.
- ◆ 258p/10,000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추진 과정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식 PART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PART는 사업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를 예산에 연계하는 단계에서 부처와 예산처 간 의견조율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게 해 주며, 사업성과를 예산에 연계해 줄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수십 년의 예산배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과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획예산처 예산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배분을 하는 담당자가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나라식의 PART에 담으면 된다. 물론 유사사업 간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을 사업의 목표, 추진수단, 대상과 성과 등에 따라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된 사업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식의 PART가 균형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평가시에 외부평가와 서베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정량적인 지표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다 정

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외부평가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계량적인 평가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외부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영국은 부처의 성과 계획서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보다 사업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물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부처의 장관 대통령 간 성과계약(performance contract)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장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처운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Top-down 방식으로 주어진 재원의 목표에 맞추어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이나 재정적,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보다 정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성과평가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평가는 부처가 중앙에서 주어진 지침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업평가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평가의 지침서를 만들고, 사업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제도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각 부처는 기존의 업무 이외에 성과평가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으로, 자칫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와 각 부처의 장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성과관리제도 추진의 의견조율 채널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서 론
2. 성과평가 관련 제도와 성과관리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평가와 시사점
4. 2003년 성과관리제도

III.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서 론
2. 미국의 GPRA
3. 영국의 성과중심 재정개혁
4. 뉴질랜드의 산출예산제도
5. 기타 국가의 성과주의
6. 거시적 관점에서의 성과주의의 국제비교
7.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 부록 1. 사업평가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 부록 2. 2003-06 SERVICE DELIVERY AGREEMENT
- 부록 3. 2003-06 PUBLIC SERVICE AGREEMENT
- 부록 4. AUTUMN PERFORMANCE REPORT
-



##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관한 이해

- ◆ 전승훈 외
- ◆ 2004. 9.
- ◆ 384p

본 보고서는 전승훈(2003)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대한 의식적 바탕과 투명성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미국 사회의 경제적 자유와 투명성의 의식적 토양을 미국인의 개인중심주의(individualism)라는 가치관으로 보고,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경제적 자유와 투명한 거래제도가 발전될 수 있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네 가지 측면, 즉 금융거래, 부동산 시장, 조세행정 및 복지제도의 운영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감사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과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의 실제 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미국의 장점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고 적용 가능한 운용규정을 마련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연방금융감사국이 이 법령의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은행은 본 법령의 시행을 위해 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와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의무를

---

진다. 금융감사국은 수상한 거래보고의 요건, 요주의 위험분야, 자금세탁의 유형, 감사의 절차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운영요령을 가지고 요주의 은행에 대한 감사 등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은행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민간의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의 소유·등기·평가·조세·모기지에 관한 제도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및 평가가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모든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부동산 거래의 내용과 재산의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와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고, 부동산의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고 우리처럼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셋째, 미국의 소득에 대한 조세행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소득세제도는 포괄적 소득을 대상으로 '자기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기부과과세제도하에서 납세순응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납세순응 확보활동(tax compliance activity)의 내용과 그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후 조세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섯 가지 제도적 장치, 곧 자료신고서(Information Returns), 세무조사(Examination)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화된 조세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세행정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율성과 권익을 철저히 존중하는 동시에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미국이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복지제도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복지지출은 이를 아주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의 수혜자는 점점 일하지 않고 받는 공짜소득을 받는 데 익숙하게 되어 일할 의욕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주정부 빈곤가정임시지원프로

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빈곤층의료보조(Medicaid), 식권(Food Stamp) 그리고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프로그램인 사회보장생활보조금(Social Security Supplemental Income) 제도가 복지의 사기와 복지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아울러 빈곤가정임시지원프로그램(TANF)을 예로 근로의욕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동 프로그램은 수혜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대부분의 수혜자는 현금보조를 2년간 받은 후에는 근로나 직업훈련을 하여야 하며, 아동의 수에 비례하여 수혜금을 주었던 것을 수혜를 받는 동안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수혜액을 올려주지 않도록 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로 근로로 자립하는 저소득 가정에 혜택(credit)을 주어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지 수혜자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근로에 종사하고 싶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의 의식적 바탕 그리고 주요 투명성 제도에 대한 구체적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 사회의 개인중심주의적, 수평적 가치관의 바탕에서 추구된 경제적 자유와 투명성이 공동체 또는 수직적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의식적 토양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있음을 통하여 경제적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제도적 핵심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하에서 부동산의 고평가와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분배에 대한 신뢰성과 부(富)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서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세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미국 복지 제도가 오랜 역사를 두고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수정·보완을 거쳐왔음은 복지프로그램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초기단계의 한국으로서는 귀감으로 삼아야 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까

지 발전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 자유와 투명성을 갖추어 창의적이고 화합적인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느냐의 능력에 달려 있다.

◆ 목 차

-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관한 이해 : 전 승 훈
  - 경제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윤리 : 장 석 정
  - 은행비밀법/자금세탁방지 운영해설 : 이 상 섭
  - 미국 부동산 거래·평가 및 과세의 투명성 : 김 선 웅
  - 소득신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장치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 : 양 영 용
  - 복지제도의 운영과 투명성 : 강경희·이봉수
-



##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 ◆ 옥 동 석
- ◆ 2004. 12.
- ◆ 230p/9,000원

재정운용 과정에서는 재정총량규모, 분야별 재정배분, 사업별 내용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 가치판단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입법권 또는 예산승인권 의 형태로 국민의 의사를 결정한다. 행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또는 예산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을 활용하여 재정을 집행한다. 또한 사법부는 예산에 대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범위, 행정권의 법률적 책임 등을 판단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참여한다.

재정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은 역사의 변천과 함께 발전하였다. 1900년대 초반까지의 선진국 경험에서 볼 때, 근대적 재정제도의 발전은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출법률주의'로서 지출의 항목별 내용과 금액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예산'으로서 국가재정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단일의 책임하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재정집행의 결과를 감사하여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통제하에서 예산으로 환류(feedback)시키는 것이다.

영국은 1217년 마그나카르타(Magna Charta) 제12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였다. 이 당시 의회의 가장 큰 관심은 국왕의 전횡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회는 자금조성을 승인할 뿐 당해 자금의 지출목적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다. 그런데 조세가 국고 수입의 일반적 재원이 아니라 특정 목적의 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통상 부과되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의회는 조세수입이 사용되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점차 발전시켰다.

조세수입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는 1600년대 전제 왕권을 행사하려던 스튜어트 왕조와 의회 사이의 투쟁에서 발전하였다. 1688년 명예혁명(1688)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특정 목적에 자금을 승인하는 ‘지출법률주의’의 원칙이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내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국왕이 결정하는 모든 지출의 내용에 대해 승인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원(House of Commons)은 지출승인 법률의 발의에서 상원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정하였다.

영국에서 ‘통합예산’의 원칙은 1787년 통합펀드법(Consolidated Fund Act)이 통과되면서 확정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단일의 자금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하였다. 만약 특정 목적에 특정 수입을 할당하는 소위 칸막이식 펀드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의회의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통합펀드 제도를 통해 정부활동을 망라하는 범정부적 재정보고서가 출범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 완벽한 형태의 예산(Budget)이 출범한 것은 바로 이 시기로서 기록될 수 있다.

1856년 하원 내에 정부회계위원회(Committee on Public Accounts)를 설치하는 지속명령(Standing Order)이 채택되고, 1866년에 ‘국고와 감사부처법(Exchequer and Audit Department Act)’이 통과되면서 ‘독립감사의 의회보고’가 채택되었다. 정부회계위원회는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받는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이다. ‘국고와 감사부처’는 국왕으로부터 독립되고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들 제도는 영국에 근대적 재정제도를 확립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선언을 한 1776년에 당시의 영국 재정제도를 본받아 ‘조세법률주의’와 ‘지출법률주의’를 확립하였다. 특히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된 지출승인에 의하지 않고는 재정부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인출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출법률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적 재정제도의 나머지 두 개 요소, 즉 ‘통합예산’과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는 1921년에 도입되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추가로 도입하기 이전인 1776년~1921년 기간중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의 체계적 예산제도가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출과 수입을 모두 망라하는 재정계획, 즉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00년대 초기에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들의 무질서한 예산현장을 지켜보면서 영국식 예산제도를 분석하여 이를 미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당시 영국식 예산제도의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였다. 첫째,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중요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둘째, 입법부는 예산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고 그 제안을 승인하는데 ‘중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와 같은 일정한 제한 내에서만 이들을 수정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수상과 내각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구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영국 재정제도로부터 도출된 이 세 가지 특징을 검토하여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미국은 근대적 재정제도의 기본 틀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우선 재정부(Treasury) 내에 예산실(Bureau of Budget)을 설치하여 행정부 주도의 예산편성 제도를 용인하여 ‘통합예산’ 제도를 확고하게 확립하였다. 그리고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를 위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치하였다. 회계검사원장은 통제총괄관(the Comptroller General)이라 불리었는데, 상원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그 임기는 15년으로서 탄핵 또는 상하 양원의 합동결의(joint resolution)로만 해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결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에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미국의 예산전문가들은 영국 의회의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가 미국과 같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하에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영국에서는 입법부와 융합되어 있는 행정부가 예산의 편성과 결정 모두를 사실상 주도하는데, 권력분립에 기초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체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하에서도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기능이 될 수 있지만, 그 승인과 결정은 본질적으로 입법부의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의회는 단일의 상임위원회가 재정의 총량규모를 판단 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의 무분별한 신비목 설치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근대적 재정제도의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거의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지출법률주의는 지출예산 각항에 대하여 그 용도와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용어로서 기술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은 관행적으로 예산과목명과 그 금액만을 열거하고 있는바, 지출방법과 목적 등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전권을 주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국회는 지출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성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근대적 재정제도의 또 다른 요소인 ‘통합예산’은 우리나라에서 그런대로 구비되어 있다. 국가의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한 계획을 행정부 주도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예산이 완벽하게 구비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전체, 또는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전체에 대한 재정활동이 망라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에 들어 정부는 통합재정의 범위에 대해 정부산하기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예산’은 점진적으로 구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혀 구비되지 않고 있다. 우선 헌법에서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감사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구나 감사결과의 국회보고는 예산회계법, 국회법 그리고 실제 관행을 참조할 때 지극히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결

과가 국회에 보고되어 그 책임성이 추궁되는 체제가 실질적으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근대적 재정제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부의 재정권한도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최악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국, 독일 등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의회의 재정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예산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 조항까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입법부의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출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출법률주의가 도입되면 지출각항에 대하여 입법부가 요구하는 제반 정책적 사항들이 법률의 형태로서 규정된다. 이 법률내용에 대한 준수 여부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다. 더구나 감사결과는 예산편성에서 법률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환류되는 실질적 수단이 확보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헌법의 규정 형식을 이유로 예산이 법률이 아니라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미 선진국에서 ‘Budget’이 실질적으로 법률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만 ‘Budget Law’로 불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영국, 미국 등에서도 ‘Budget’이라는 예산은 지출계획의 일람표로서 그 자체가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Budget’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출각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을 예산서류와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출승인법이 수반되는 지출계획 일람표를 ‘Budget Law’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예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출승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제헌헌법 이래로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였던 이유는 헌법 제정과정에서 선진국의 예산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일본국 헌법과 일본제국 헌법의 재정권

조항을 모방 혼합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일제시대를 통해 우리나라에 고착화된 일본식 예산론과 예산회계 운용관행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물론 일본도 1889년 이래로 예산비법률주의를 변함없이 채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 국가이며 또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 조항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목 차

### 제I장 머리말

### 제II장 영국 재정민주주의의 발전

1. 초기의 재정통계
2. 지출통제의 발전: 공무목록과 통합펀드
3. 입법부 증액금지
4. 독립된 감사
5. 하원의 정부회계위원회

### 제III장 미국 재정민주주의의 발전

1. 독립 이후의 무질서한 예산
2. 행정부 예산제도의 도입
3. 입법부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의 거부권
4. 회계감사원의 독립
5. 통합예산의 발전

### 제IV장 한국 재정민주주의의 평가

1.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
2. 재정민주주의의 평가요소
3. 종합평가

제V장 재정민주주의의 핵심과제 - 지출승인법

1. 예산비법률주의의 근원
2. 예산과 지출승인법
3. 미국의 지출승인법
4. 지출승인법 도입의 효과

제VI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헌법'

부록 2. 2004년말 현재 '예산회계법'

---



##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 ◆ 박기백·전택승·주상영·이철인  
이기영·박원석·김진영·김상헌
- ◆ 2004. 12.
- ◆ 630p/23,000원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지표개발이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로직모형을 이용한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사업평가지침서 및 PART 도입방안 연구는 미국의 PART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사업평가지침을 살펴본 후 미국의 PART를 벤치마킹한 PMAT 및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사업평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PMAT와 사업평가지침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MAT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성과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객관적인 질문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평가지침에서는 PMAT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업의 사전적·사후적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인 사업모형, 평가에 대한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용한 성과정보는 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PMAT의 각 질문을 통해 개별사업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후의 연구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주택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구축효과를 지적하고 있으며, 자가율과 공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최하위 소득계층에게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물량 및 평형규모를 축소할 것과, 수요자(임차인) 지원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적신용보증제도의 평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업적 방식의 중소기업금융과 공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공적인 신용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공적인 신용보증과 정책금융의 시장지배로 시장원리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 육성의 기회가 차단되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 역시 중소기업 금융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유인이 적은 상태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용보증제도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금융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공적 지원자금을 배분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운영원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재정지출 평가연구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 분석 결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과 고용 및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첫째, 혁신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종합적 재정지출체계를 구축할 것과 둘째,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것 셋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출 평가제도

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것을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평가연구는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성과와 재정지원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1999년을 전후로 하여 연구실적의 출간수가 성장률 면에서 15% 내외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BK21사업은 이러한 감소추세를 일정 수준(4% 정도) 완화시켜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밖에 학술연구조성사업과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대학기반조성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연구 활동 진작과 새로운 지식창출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방식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우선 새로운 지식의 창출시장에 대한 효율성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여기에는 철저한 경제원리의 적용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서, 형평성에 기초한 지원보다는 우수한 연구자 또는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관보다는 인센티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개인 위주의 성과유도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사업평가를 위한 사회적 후생의 계량적 측정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온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부사업이 국가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업담당 주체의 내부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사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소홀히 되어 온 이유로 사업의 효과평가를 위한 기법의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는 정부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후생의 계량적 측정기법을 소개, 정리하고, 사회적 후생에 대한 이론 및 실질적 도구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사회후생의 계량적 측정사례 부분에서는 앞에서 소개된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정부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목 차

-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지표개발
  - 사업평가지침서 및 PART 도입방안 연구
  -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효과성 평가
  -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평가 -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 국가산업단지의 재정지출 평가 -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중심으로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평가: 연구성과와 인지도 개선
  - 정부사업 평가를 위한 사회적 후생의 계량적 측정
-

재정연구



- ◆ 2004年 8月
- ◆ 168p/6,000원

● 한계세율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노현섭·서갑수·서종길

한계세율은 자금조달 의사결정, 자본비용의 계산, 보상의사결정, 과세증권과 비과세증권 간의 상대적인 자산가격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한계세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계세율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재무자료(KIS-FAS)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을 측정한다.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한계세율의 대체측정치에 비하여 합리적인 한계세율의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 어느 대리변수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에는 완전예측 한계세율, 시뮬레이션 한계세율, Manzon 한계세율 등 3 가지 한계세율 측정치와 법정한계세율, 과세소득 더미변수,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삼분변수와 4분변수 등 5가지 더미변수, 그리고 평균세율, Zimmerman 세율 등 2가지 유효세율 측정치 등이 있다.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진실한' 한계세율을 예측하는 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예측 한계세율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한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 한계세율이 다른 대리변수에 비하여 예측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레버리지가 기업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System-GMM을 이용한 상장제조기업 패널 분석/조삼용·신선우·이훈현

본 연구는 1981~2002년 기간 중 계속 상장된 389개 제조기업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레버리지가 기업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의 동태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추정하기 위해 Dynamic System GMM 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추정 결과는 투자에 대한 레버리지의 영향이 분석대상기간 동안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성장기회가 낮은 기업(토빈q가 1보다 작은 기업, 매출증가율 하위 25%기업, 총고정자산증가율 하위 25%기업)일수록 더 큰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nsen(1986)과 Stulz(1990)의 부채에 의한 대리인비용의 감소효과 이론과 일치한다. 즉, 추정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한 기업은 부채사용이 높을수록 무리한 기업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Myers and Majluf(1984)의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회와 성장기회가 낮은 기업에서 대리인비용의 감소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무선 데이터 통신 과금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김정유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용시간에 따라 과금하는 회선과금방식과 정보이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패킷과금방식의 시장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주된 결론은 패킷과금방식이 도입되면, 정보이용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상승할 것이나, 총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회선과금방식과는 달리 패킷과금방식은 정보전송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텍스트 파일보다 높은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전송의 경우에는 패킷과금방식으로의 선회가 멀티미디어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멀티미디어 수요를 진작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혼잡이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만 국한되며, 혼잡의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재 정 포 럼



**2004년 1월호  
(통권 제91호)**

**1. 권두칼럼**

부동산 관련 조세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송대희

**2. 현안분석**

- 1)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 전병목
- 2)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 박기백
- 3)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수입측면을 중심으로 / 박노욱

**3. 전국 대학(원)생 현상 논문 공모 우수작**

고용 창출을 위한 선택적 차별과세/이육진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전자상거래시장 동향 외

**5. 정책흐름**

- 1) 2004년 1월 1일부터 조세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 주요 내용
- 3) 2004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확정
- 4)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6. 재정통계**

조세총괄 V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양도세 벌금수준으로 올라 외



2004년 2월호  
(통권 제92호)

**1. 권두칼럼**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 / 곽태원

**2. 현안분석**

- 1) 실업구조 변화와 실업대책 / 원종학
- 2)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세편에 관한 연구 / 김현숙
- 3)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쟁점 분석 / 박형수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호주 노동당, TCF품목 관세인하계획 수정 촉구 외

**4. 정책흐름**

- 1) 2003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2) 2004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분석
- 3) 2004년 상반기 재정집행 54.8%
- 4)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금년 계획

**5. 재정통계**

조세총괄 VI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접대비 규제 현실화해야 외



2004년 3월호  
(통권 제93호)

**1. 권두칼럼**

경제정책,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 전주성

**2. 현안분석**

- 1) 향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대한 소고 / 노영훈
- 2) B2C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소고 / 흥범교
- 3) 의료기관 관련 조세정책의현황과 정책방향 / 손원익

**3. 정책토론포트**

- 1)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
- 2)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독일 재무장관, 근본적 세제개혁 요구 외

**5. 정책흐름**

- 1) 제1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 2) 부동산투기지역 지정현황
- 3)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및 소득분배동향
- 4) 2003 회계연도 통세입부총세출부 마감

**6. 재정통계**

소득세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SOC 투자 효율성 점검해야 외



2004년 4월호  
(통권 제94호)

**1. 권두칼럼**

참여정부 1년의 경제회고와 과제 /  
김준영

**2. 현안분석**

- 1) 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 성명재
- 2)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 / 정재호
- 3) 개별과세정보는 국회에 공개되어야 하나? / 현진권

**3. 정책토론티포트**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분과별 토론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향후 5년간 세금감면 관

문 높여 외

**5. 정책흐름**

- 1)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2) 특별소비세율 인하
- 3) 2003년 통합재정수지 8.1조원 흑자 시현
- 4) 세금포인트제 최초 시행
- 5) 올해 지방예산규모 87조 2,840억 원

**6. 재정통계**

소득세 II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신용불량자 대책, 첫발은 땀지만 외



2004년 5월호  
(통권 제95호)

**1. 권두칼럼**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 나성린

**2. 현안분석**

- 1) 인구구조 고령화의 재정영향 / 최준욱
- 2) 경제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 안중석
- 3) 네덜란드 환경세제의 변화와 시사점: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 현진권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G7, 세제·노동개혁 합의 외

**4. 정책흐름**

- 1) 2003 회계연도 정부결산
-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

월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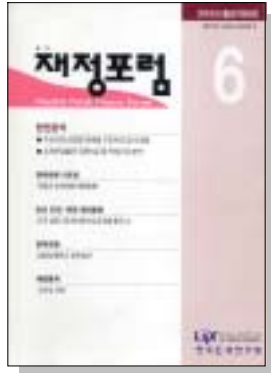
- 3)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 4)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 5) 2003년말 국가채무 165.7조원
- 6)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방안

**5. 재정통계**

소득세 Ⅲ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이제는 물가안정이다 외



2004년 6월호  
(통권 제96호)

**1. 권두칼럼**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과 Top-down 방식의 자원배분 / 원윤희

**2. 현안분석**

- 1)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비교 및 시사점 / 정재호
- 2)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 수준 분석 / 박형수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인터넷 접속세 금지법 통과 외

**4. 정책흐름**

- 1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 2) OECD, 경제전망 발표

3) 2003회계연도 정부결산

4) 4월까지 지난해보다 3.1조원 증가한 56.8조원 재정집행

**5. 재정통계**

소득세 IV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산세 개편은 보유세 강화로 외



2004년 7월호  
(통권 제97호)

**1. 권두칼럼**

재정안정화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 이만우

**2. 현안분석**

- 1) 중국의 최근 조세정책 / 한상국
- 2) 우리나라 수자원관련 조세정책 방향 / 전병목
- 3)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 노영훈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회원국, 조세부담률 지속적으로 감소 외

**4. 정책흐름**

- 1) 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 2) '04.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

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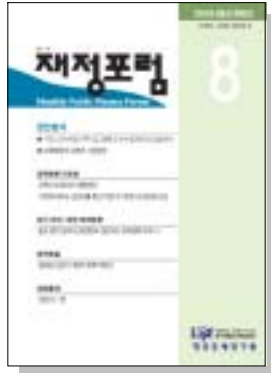
- 3)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4)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
- 5) 국가재원배분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
- 6)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 7) '04년 1/4분기 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

**5. 재정통계**

양도소득세 I 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금, 국민을 이해시켜라 외



**2004년 8월호**  
(통권 제98호)

**1. 권두칼럼**

재정개혁의 과제 / 임성일

**2. 현안분석**

- 1)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김현숙
- 2)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 현진권

**3. 정책토론포트**

- 1)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2)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경기 살아나 2003년도 법인세 수 10조엔대 회복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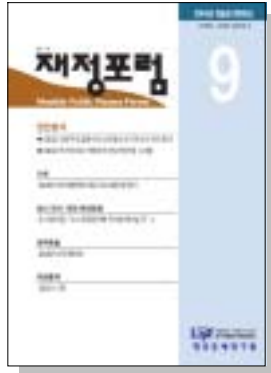
- 1) 2004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동향
- 2)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지원 현황
- 3) 2004년 6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4) 추경예산 등 3.2조원 3/4분기에 집행
- 5)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

**6. 재정통계**

법인세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아파트 재산세 반발, 옳지 않다 외



**2004년 9월호  
(통권 제99호)**

**1. 권두칼럼**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 / 박성배

**2. 현안분석**

- 1) OECD 회원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동향 / 홍범교
- 2) OECD 국가의 대학 지배구조 변화 동향 및 시사점 / 안종석

**3. 기획**

- 1) 중점 조세정책 방향 및 2004년도 세제개편안 / 백운찬
- 2)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 / 안종석
- 3)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I) / 곽태원
- 4)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II) / 손광락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하원의장, “부시 재집권하면 국제청 폐지될 것”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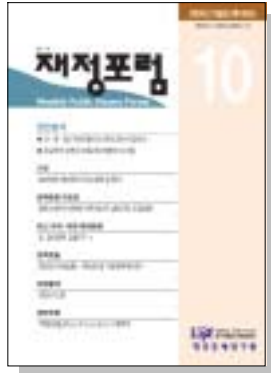
- 1) 소득세 경감 및 특소세 폐지관련 보도 참고자료
- 2) 2004년 세제개편(안)
- 3) 기금운용평가단에서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

**6. 재정통계**

법인세 II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기금 주식투자의 전제조건 외



2004년 10월호  
(통권 제100호)

**1. 권두칼럼**

미국에서의 소비세 논쟁과 시사점 / 최용선

**2. 현안분석**

- 1) 한·중·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 / 정재호
- 2)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 김현아

**3. 기획**

- 1)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김규옥
- 2)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 / 박형수
- 3)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I) / 박정수
- 4)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III) / 옥동석

**4. 정책토론포트**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  
대가격 조정방안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감세정책 힘쓸까 외

**6. 정책흐름**

- 1) 2005년 나라살림-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 2)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
- 3)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 4) '04년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

**7. 재정통계**

법인세 Ⅲ편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기초연금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외

**9. 권말부록**

『재정포럼』 총목차



2004년 11월호  
(통권 제101호)

**1. 권두칼럼**

국제조세행정의 도전과 대응 / 최병철

**2. 현안분석**

- 1) 캐나다의 재정건진성 회복 / 김 진
- 2)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 / 한상국
- 3) 공공부문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 / 박노욱

**3. 기획**

에드워드 프레스콧의 학문세계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기업이익 증대 불구 세수입은 2000년 수준 못 미쳐 외

**5. 정책흐름**

- 1)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2)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 3)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간 연장
- 4) 금년도 종합토지세 2조 1,168억원 부과

**6.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유엔의 “국제조세기구” 창설 기도 외



2004년 12월호  
(통권 제102호)

**1. 권두칼럼**

매력 있는 나라 만들기 / 윤순봉

**2. 현안분석**

- 1)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 김중면
- 2) 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 원종학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세금 민간인이 걷는다 외

**4. 정책흐름**

- 1) 보유세제 개편방안
- 2) 2004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3)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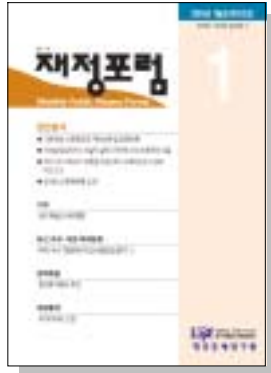
**5.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기금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외

---



2005년 1월호  
(통권 제103호)

**1. 권두칼럼**

경제발전과 대학교육 / 권선주

**2. 현안분석**

- 1)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 김현숙
- 2)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 김형준
- 3)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 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 성명재
- 4)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 전병목

**3. 기획**

최근 독일의 세제개편 / 김유찬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부시 “연금개혁 위한 세금인상 없다” 외

**5. 정책흐름**

- 1) 종합투자계획 추진
- 2) 제2차 에너지세계개편안 확정
- 3) 04년 3/4분기말 현재 총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잠정)
- 4) 재정운용의 성과와 향후과제
- 5)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

**6.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II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



2005년 2월호  
(통권 제104호)

**1. 권두칼럼**

작은 정부와 일 잘 하는 정부/  
옥동석

**2. 현안분석**

- 1)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 노영훈
- 2)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  
교 / 박형수
- 3)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 /  
김진수

**3. 기획**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정 / 원종학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법인세 면제 회사 허용' 추진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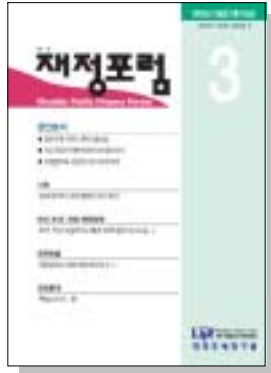
- 1) 2004년 국세수입 실적
- 2)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  
액공제 시행
- 3)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  
·규칙 개정
- 4)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6.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Ⅲ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령친화산업' 육성 빈틈 없이 추진  
해야 외



**2005년 3월호**  
(통권 제105호)

**1. 권두칼럼**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 서희열

**2. 현안분석**

- 1)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생산성 / 류덕현
- 2)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이해와 분석 / 박상원
- 3)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 정재호

**3. 기획**

2004 미국의 세제개편과 향후 동향 / 장근호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자산부풀리기로 매년 290억달

러 세수손실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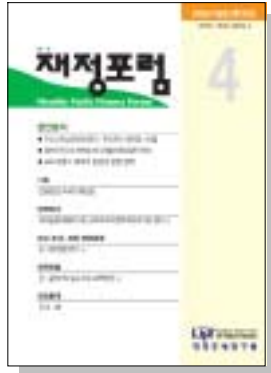
- 1)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
- 2) 소득분배 현황 관련 참고자료
- 3) 제252회 임시국회 재경위 업무현황보고 자료
- 4)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6.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주택 양도세 실질적 면제 유지해야 외



2005년 4월호  
(통권 제106호)

**1. 권두칼럼**

경제발전과 납세자 권리구제 / 김용민

**2. 현안분석**

- 1)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안중석
- 2)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도시개발비용부담의 의미 / 김현아
- 3) 교도의정서 체제의 환경세 관련 정책 / 권오성

**3. 기획**

2006년도 미국의 예산안 / 박형수

**4. 정책연구**

- 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 정비 / 홍범교
- 2)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II) / 박형수·최준욱·김진
- 3)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 손원익·정재호·김형준·김상헌
- 4)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박기백·김진·전병목

- 5) 여성인력 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 김현숙·원종학

- 6)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김현아·박상원·김형준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세무행정 위기 외

**6. 정책흐름**

- 1)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 2) 2004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 3)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
- 4) 제2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6. 재정통계**

주세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4년 새 2배로 늘어난 기업 준조세 외



**2005년 5월호**  
(통권 제107호)

**1. 권두칼럼**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한 친  
환경적 세계개편의 필요성 / 구정모

**2. 현안분석**

- 1) 법인세 평준화 / 박기백
- 2)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  
화 / 전병목

**3. 기획**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 / 류덕현

**4. 정책연구**

- 1)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 안증석
- 2)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 박노욱
- 3)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  
율 변화연구 / 정재호·류덕현
- 4)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

제도 정비방안 / 권오성·하현구

- 5)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  
옥동석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영국, 어린이·노인에 세제혜택 외

**6. 정책흐름**

- 1)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 2)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  
하 적용시한 재연장
- 3) Ten-Ten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  
획본부 역할 수행
- 4)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 정기고시

**6. 재정통계**

상속세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당연하다 외



2005년 6월호  
(통권 제108호)

**1. 권두칼럼**

조세개혁 논의에 불여 / 이진오

**2. 현안분석**

1) 공공부문 제공의 효율성에 대한  
일고: 인프라-서비스 구조를 중심  
으로 / 김진

2)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  
세제도 - 호주 및 뉴질랜드 사례/  
김재진

3)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 정  
착 / 김중면

**3. 기획**

독일·프랑스·호주·뉴질랜드의 2005  
년도 예산안 / 류덕현

**4. 정책연구**

1) 법인세 부담 연구-미시자료를 중  
심으로 / 박기백·김진

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배  
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  
심으로 / 김진수

3)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  
박기백 외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속세 폐지될라 숨죽인 자선  
단체들 외

**6. 정책흐름**

- 1)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
- 3) 토지분 재산세 부담 증가 완화
- 4)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7. 재정통계**

상속세 II편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종합부동산세 기업만 덤터기 쓰나 외



2005년 7월호  
(통권 제109호)

**1. 권두칼럼**

경기를 살리려면 / 홍순영

**2. 현안분석**

- 1) 정부지출과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에 관한 일고 / 박노욱
- 2)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방안 / 원중학
- 3)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 분석 / 박형수

**3. 정책토론포트**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4. 정책연구**

- 1)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 김형준·현진권
- 2)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 노영훈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앞서가는 홍콩 세제(稅制) 외

**6. 정책흐름**

- 1)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2) '05. 6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3)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7. 재정통계**

증여세 I 편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집값 대책, 보유세제부터 바로잡아라 외



2005년 8월호  
(통권 제110호)

**1. 권두칼럼**

철도와 재정 / 배준호

**2. 현안분석**

- 1) 중국의 이진가격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한상국
- 2) 경제성장률의 감소와 소비의 침체 / 김형준
- 3)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 비교 / 김현숙
- 4)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방침과 향후 검토과제 / 노영훈

**3. 정책토론편**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4. 정책연구**

- 1)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 김종면·성명재
- 2)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성명재·김종면

- 3)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 (II): 고령화 대응 조세·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준욱·전병목·김우철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담배소비세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 외

**6. 정책흐름**

- 1) 최근 심리지표 움직임의 주요 특징 및 원인 분석
- 2)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분석
- 3) 2005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

**7. 재정통계**

기타세 I 편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종부세 강화 막을 일 아니다 외

1993~2004

**발간도서목록**



연구총서
------

1. KTI 금융모형: 금융·거시 통합모형  
최장봉·이인표/1995. 2/값 9,000원
2.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0,000원
3.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4.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5.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V)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6.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  
임주영(편)/B5변형/365면/1998. 12/값 12,000원
7.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  
임주영(편)/1998. 12/값 10,000원
8.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I)  
임주영(편)/1998. 12/값 11,000원

연구보고서
-------

- 93-01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손광락/1993. 9/값 5,100원
- 93-02 소비세 부담 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성명재/1993. 10/값 5,500원
- 93-03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명근/1993. 10/값 4,000원
- 93-04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윤건영·임주영/1993. 10/값 6,100원

- 93-05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이성욱·한상국·최명근/1993. 11/값 6,500원
  - 93-06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김유찬/1993. 11/값 6,000원
  - 93-07 금융선물거래의 도입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분석  
최흥식·홍범교/1993. 12/값 7,000원
  - 93-08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김진수/1993. 12/값 8,500원
  - 93-09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니성린·현진권/1993. 12/값 6,500원
  - 93-10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수/1993. 12/값 7,200원
  - 93-11 대만의 환율운용과 수출경쟁력  
김종만/1993. 12/값 6,000원
  - 94-01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  
최장봉/1994. 2/값 5,500원
  - 94-02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률의 모색  
김명숙/1994. 4/값 2,500원
  - 94-03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김진수·안중석/1994. 5/값 4,500원
  - 94-04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향  
성명재·현진권/1994. 6/값 7,100원
  - 94-05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세합리화 방안  
최명근/1994. 7/값 7,000원
  - 94-06 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현진권/1994. 10/값 9,500원
  - 94-07 국세통칙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철송/1994. 11/값 6,000원
-

- 
- 94-08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곽태원/1994. 12/값 4,500원
- 94-09 환율운동과 수출경쟁력  
김종만/1994. 12/값 9,900원
- 94-10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편방안  
김유찬/1994. 12/값 4,000원
- 94-11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안중범 외/1994. 12/값 9,000원
- 94-12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안중석/1994. 12/값 3,000원
- 95-01 담배소비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김진수·성명재·박정수·이성욱/1995. 2/값 11,000원
- 95-02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안중길/1995. 5/값 6,000원
- 95-03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1995. 12/값 7,000원
- 95-04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현진권/1995. 12/값 4,000원
- 95-05 세수추계모형과 세수전망  
성명재/1995. 12/값 5,000원
- 95-06 재정정책 기조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이창용·조윤제/1995. 12/값 3,000원
- 96-01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김종만/1996. 4/값 6,000원
- 96-02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박정수·안중석/1996. 4/값 7,000원
- 96-03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통금융의 현황 및 정책과제  
이기영/1996. 5/값 5,000원
-

- 96-04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추정  
현진권/1996. 8/값 5,500원
  - 96-05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향  
김종만/1996. 10/값 7,000원
  - 96-06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상국·배준호·이광재/1996. 12/값 16,000원
  - 96-07 기업의 차입과 세제  
손원익/1996. 12/값 5,000원
  - 96-08 한국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 KIPF96Q  
박종규/1996. 12/값 5,500원
  - 96-09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손원익 외/1996. 12/값 6,500원
  - 96-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안중석·박정수/1996. 12/값 8,000원
  - 96-11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유시권/1996. 12/값 6,500원
  - 96-12 한국의 토지세제  
노영훈·이성욱·이진순/1996. 12/값 6,000원
  - 97-0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정수/1997. 3/값 6,000원
  - 97-02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관계  
김건우/1997. 3/값 4,000원
  - 97-03 단위근 검정과 세수추계  
성명재/1997. 3/값 6,000원
  - 97-04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장 춘/1997. 3/값 11,000원
  - 97-05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와 세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성명재/1997. 4/값 5,000원
-

- 
- 97-06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박대근·이창용/1997. 5/값 4,000원
- 97-07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전주성/1997. 4/값 4,000원
- 97-08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전영준/1997. 4/값 4,000원
- 97-09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1997. 5/값 5,000원
- 97-10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분석과 석유류 과세정책의 개선방향  
성명재/1997. 7/값 7,000원
- 97-11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손원익/1997. 10/값 5,000원
- 97-12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손광락/1997. 8/값 4,000원
- 97-13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안  
장근호·김진수/1997. 11/값 9,000원
- 97-14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성명재/1997. 11/값 5,000원
- 97-15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노영훈/1997. 12/값 6,000원
- 97-1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전영준·한도숙/1997. 12/값 7,000원
- 97-17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장근호/1997. 12/값 7,000원
- 98-01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소득 추계(1954~1996)  
표학길/1998. 6/값 7,000원
- 98-02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성명재·전영준/1998. 5/값 6,000원
-

- 98-03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상·이준규/1998. 12/값 4,000원
  - 98-04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국중호/1998. 12/값 4,000원
  - 98-05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소비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안석환 외/1998. 12/값 4,000원
  - 98-06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손원익 외/1998. 12/값 9,000원
  - 98-07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장근호/1998. 12/값 14,000원
  - 98-08 인적자본과 조세  
이철인/1998. 12/값 6,000원
  - 98-09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이용섭/1999. 5/값 7,000원
  - 99-01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성명재·장근호/1999. 12/값 12,000원
  - 99-02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  
장근호·이명현/1999. 12/값 10,000원
  - 99-03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성명재·전영준/1999. 12/값 10,000원
  - 99-04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산업별 거시경제모형: KIPF99Q  
박종규/1999. 12/값 8,000원
  - 99-05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박종규/1999. 12/값 4,000원
  - 00-01 혼합분포 추정을 통한 중심(core) 인플레이션을 측정  
박종규/2000. 3/값 5,000원
  - 00-02 외환위기 발생 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 부담의 변화 분석  
성명재/2000. 11/값 9,000원
-

- 
- 00-03 세수추계의 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전환효과  
박기백·이명헌/2000. 12/값 6,500원
- 00-04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전영준·한도숙/2000. 12/값 8,000원
- 00-05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이철인·전영준/2000. 12/값 9,000원
- 00-06 저축률 하락과 재정정책  
박종규·김진영/2000. 12/값 5,000원
- 00-07 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김정훈/2000. 12/값 5,000원
- 00-08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한도숙/2000. 12/값 5,500원
- 00-09 의료비 지출의 장기예측  
김종면/2000. 12/값 8,500원
- 00-10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이명헌·정재호/2000. 12/값 5,000원
- 00-11 장기 거시-재정 모형(KIPF00A): 공적자금의 재정 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  
박종규/2000. 12/값 5,000원
- 00-12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2001~2005)  
박종규·박기백·성명재·전영준/2000. 12/값 5,500원
- 01-01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성명재/2001. 11/값 8,000원
- 01-02 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 방안  
이철인/2001. 11/값 10,000원
- 01-03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현진권·박창균/2001. 12/값 7,000원
-

- 01-04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박기백/2001. 12/값 7,000원
  - 01-05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김진영/2001. 12/값 7,000원
  - 01-06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이명현·성명재/2001. 12/값 6,000원
  - 01-07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전영준·김종면/2001. 12/값 6,000원
  - 01-08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김진영·박창균/2001. 12/값 6,000원
  - 01-09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정훈/2001. 12/값 6,000원
  - 02-01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  
심으로  
성명재/2002. 6 23/값 7,000원
  - 02-02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전병목/2002. 12. 31/값 7,000원
  - 02-03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보형: KEFM02  
박형수/2002. 12.13/값 6,000원
  - 02-04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박기백·박형수/2002. 12. 31/값 7,000원
  - 02-05 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분석  
김종면/2002. 12. 31/값 5,000원
  - 02-06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  
율 인상효과분석  
이명현·성명재/2002. 12. 30/값 6,000원
  - 02-07 지속가능발전과 최적 환경세에 대한 연구  
권오성/2002. 12. 30/값 6,000원
-

- 
- 03-01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 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성명재·박기백·김현아/2003. 8. 31/값 8,000원
- 03-02 장기인력수급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김종면·성명재/2003. 12. 31/값 9,000원
- 03-03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전병목·원종학/2003. 12. 31/값 7,000원
- 03-04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성명재·박노욱/2003. 12. 31/값 11,000원
- 03-05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안  
김진수·박형수·안중석/2003. 12. 31/값 7,000원
- 03-06 국제조세회피: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안중석·최준욱/ 2003. 12. 31/값 6,000원
- 03-07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오성·강만욱/2003. 12. 31/값 9,000원
- 03-08 인구구조의 변화와 조세·재정정책: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최준욱·전병목/2003. 12. 31/값 8,000원
- 03-09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김정훈/2003. 12. 31/값 6,000원
- 03-10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노영훈/2003. 12. 31/값 7,000원
- 04-01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박기백·김진·전병목/2004. 12/값 6,000원
- 04-02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김종면·성명재/2004. 12/값 9,000원
- 04-03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204 연구결과 요약집

---

성명재·김종면/2004. 12/값 9,000원

04-04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숙·원중학/2004. 12/값 9,000원

04-05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안중석/2004. 12/값 7,000원

04-06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김현아·박상원·김형준/2004. 12/값 7,000원

04-07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박노욱/2004. 12/값 6,000원

04-08 법인세 부담 연구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박기백·김진/2004. 12/값 6,000원

04-09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I): 고령화 대응 조세·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노영훈/2004. 12/값 7,000원

04-10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김형준·현진권/2004. 12/값 6,000원

04-11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노영훈/2004. 12/값 6,000원

---

**영문연구보고서**

96-01 Land Taxation in Korea  
Ro Young Hoon/1996. 12

---

**정책보고서**

93-01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최장봉/1993. 9/값 4,300원

---

- 
- 93-0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유시권·임주영/1993. 10/값 4,900원
- 93-03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곽태원/1993. 10/값 5,300원
- 93-04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손광락 외/1993. 11/값 8,500원
- 94-01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이기영/1994. 1/값 5,500원
- 94-02 적정 통화지표의 선정  
이인표/1994. 4/값 4,900원
- 94-03 금융자율화와 신금융상품의 개발  
홍범교/1994. 4/값 5,000원
- 94-04 재산보유세의 귀착: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재고찰  
김명숙/1994. 5/값 5,500원
- 94-05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개편방안  
최흥식/1994. 7/값 4,600원
- 94-06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박정수/1994. 8/값 6,100원
- 94-07 취득과세형 상속세 전환에 관한 연구  
한상국/1994. 10/값 5,700원
- 94-08 스칸디나비아 3국의 조세제도 - 스웨덴을 중심으로  
박노호/1994. 11/값 11,000원
- 94-09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  
조운제·안중석/1994. 12/값 5,500원
- 95-01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조운제·황현리/1995. 3/값 3,000원
- 95-02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개선방향  
이기영/1995. 5/값 2,500원
-

- 95-0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김유찬/1995. 6/값 3,000원
  - 95-04 재정정책의 경기조정 기능  
박종구/1995. 7/값 3,000원
  - 95-0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손원익/1995. 7/값 3,000원
  - 95-06 석유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성명재/1995. 9/값 3,000원
  - 95-07 사용료소득 과세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김유찬/1995. 12/값 4,000원
  - 96-01 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 분석  
최장봉·안종길·김기흥/1996. 4/값 12,000원
  - 96-02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방안  
정영현·박정수/1996. 6/값 4,000원
  - 96-03 WTO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임주영/1996. 6/값 3,000원
  - 96-04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박상태/1996. 8/값 11,000원
  - 96-05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최흥식·김성룡/1996. 8/값 7,000원
  - 96-06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6. 8/값 4,000원
  - 96-07 업종전문화시책의 현황, 평가 및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  
이기영/1996. 9/값 3,500원
  - 96-08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1996. 11/값 5,500원
  - 96-09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현진권/1996. 12/값 6,000원
-

- 
- 96-10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김진수/1996. 12/값 4,500원
- 96-11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규제완화  
김종만/1996. 12/값 4,000원
- 96-1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한도숙/1996. 12/값 6,000원
- 96-13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6. 12/값 4,000원
- 97-01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과 정책과제  
홍범교/1997. 4/값 4,000원
- 97-02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7. 4/값 5,000원
- 97-03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박상태/1997. 5/값 8,000원
- 97-04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안중석/1997. 6/값 4,000원
- 97-05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에 관한 연구  
이기영/1997. 6/값 4,000원
- 97-06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임주영/1997. 12/값 4,000원
- 97-07 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1997. 7/값 5,000원
- 97-08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한상국/1997. 7/값 4,000원
- 97-09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유시권·이노창·유재권·오엽록/1997. 8/값 4,000원
- 97-10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유시권/1997. 10/값 5,000원
-

- 97-1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임주영·장근호·노영훈/1997. 9/값 5,000원
  - 97-12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 우리의 대응  
홍범교/1997. 11/값 4,000원
  - 97-13 對中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소고  
한상국/1997. 12/값 4,000원
  - 97-14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안중석/1997. 12/값 4,000원
  - 97-15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7. 12/값 4,000원
  - 97-16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김진수 외/1997. 12/값 4,000원
  - 97-17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손원익/1997. 12/값 4,000원
  - 98-01 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연구  
국중호/1998. 3/값 5,000원
  - 98-02 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문춘걸/1998. 3/값 5,000원
  - 98-03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홍용식/1998. 7/값 6,000원
  - 98-04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윤건영·최영순/1998. 6/값 4,000원
  - 98-05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박종규/1998. 6/값 6,000원
  - 98-06 물가지수 연계채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이상섭/1998. 7/값 4,000원
  - 98-07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성명재/1998. 12/값 6,000원
-

- 
- 98-08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김유찬·홍범교/1998. 12/값 5,000원
- 98-09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국중호/1998. 12/값 6,000원
- 98-10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김진수/1998. 12/값 5,000원
- 98-11 외국제도와외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김유찬/1998. 12/값 5,000원
- 98-12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김재진·김진수/1998. 12/값 7,000원
- 98-13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전영준/1998. 12/값 4,000원
- 98-14 기업분할과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8. 12/값 4,000원
- 98-15 유가증권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및 과세방안  
한상국/1998. 12/값 5,000원
- 98-16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한상국/1998. 12/값 4,000원
- 99-01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박기백·최준욱/1999. 12/값 7,000원
- 99-02 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  
이상섭·김진수·한상국/1999. 12/값 6,000원
- 99-03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9. 12/값 6,000원
- 99-04 특별소비세 부담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성명재/1999. 12/값 9,000원
- 99-05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성명재/1999. 12/값 5,000원
-

- 99-06 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영준·이철인/1999. 12/값 4,000원
  - 99-07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김정훈/1999. 12/값 6,000원
  - 99-08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노영훈·연태훈·홍범교/1999. 12/값 4,000원
  - 99-09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노영훈·장근호/1999. 12/값 13,000원
  - 00-01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손원익/2000. 12/값 6,000원
  - 00-02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김정훈/2000. 12/값 6,000원
  - 00-03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도숙/2000. 12/값 6,000원
  - 00-04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현진권·정재호/2000. 12/값 5,000원
  - 00-05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김재진/2000. 12/값 6,500원
  - 01-01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홍범교·안중석/2001. 12/값 7,000원
  - 01-02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황국재/2001. 12/값 10,000원
  - 01-03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정재호/2001. 12/값 8,000원
  - 01-04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안중석/2001. 12/값 6,000원
  - 01-05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I)  
최준욱·전택승·이명현·한상국/2001. 12/값 19,000원
-

- 
- 01-06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전영준/2001. 12/값 6,000원
- 01-07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최준욱/2001. 12/값 7,000원
- 02-0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수·이준규/2002. 9. 31/값 8,000원
- 02-02 재정의 지방분권화: 남미국가들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와 시사점  
안중석/2002. 12. 18/ 값 9,000원
- 02-03 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II)  
최준욱·이명현·전택승/2002. 12. 18/값 9,000원
- 02-04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향-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최명근/2002. 12. 31/값 10,000원
- 02-05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준규·김진수/2002. 12. 31/값 6,000원
- 02-06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이명현/2002. 12. 31/값 8,000원
- 02-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 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김재진·권오성/2002. 10. 30/값 11,000원
- 02-08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김진수·김재진/2002.12. 31/값 14,000원
- 02-09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손원익/2002. 12. 31/값 5,000원
- 02-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김정훈/2002. 12. 31
- 02-11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 경제개방이 자본소득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  
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정책 논의  
최준욱/2002. 12. 31/값 6,000원
-

- 
- 02-12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노영훈/2002. 12. 31/값 6,000원
  - 03-01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한상국/2003. 12. 31/값 11,000원
  - 03-02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홍범교/2003. 12. 31/값 7,000원
  - 03-03 관세율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와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 12. 31/값 11,000원
  - 03-04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박형수·박기백/2003. 12. 31/값 8,000원
  - 03-05 조세감면의 합리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박기백·정재호/2003. 12. 31/값 8,000원
  - 03-06 지방소비·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김현아/2003. 12. 31/값 8,000원
  - 03-07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노영훈/2003. 12. 31/값 6,000원
  - 03-08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김재진/2003. 12. 31/값 12,000원
  - 03-09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전택승/2003. 12. 31/값 7,000원
  - 03-10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손원익/2003. 12. 31
  - 04-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정비  
홍범교/2004. 12/값 7,000원
  - 04-02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II)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박형수·최준욱·김진/2004. 12/값 8,000원
  - 04-03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정재호·류덕현/2004. 12/값 7,000원
-

- 
- 04-04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권오성·하현구/2004. 12/값 8,000원
  - 04-05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  
김진수/2004. 12/값 8,000원
  - 04-06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손원익·정재호·김형준·김상현/2004. 12/값 18,000원

---

<b>연구논문집</b>
--------------

- 93-01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최광외/1993. 12/값 9,000원
  - 94-01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조운제 외/1994. 11/값 7,000원
  - 95-01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제1권 조세정책 : 이우택 외/1995. 12/값 7,000원  
제2권 금융정책 : 조운제 외/1995. 12/값 6,000원
  - 96-01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편)/1996. 4/값 11,000원
  - 97-01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정영현 외/1997. 12/값 5,000원
  - 98-01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현진권 편/1998. 12/값 8,000원
  - 98-02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용방향  
/1998. 12/값 5,000원
  - 99-01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  
/1999. 12/값 4,000원
  - 99-02 조세개혁의 효율성 제고  
현진권 편/1999. 12/값 7,000원
-

---

**정책연구**

98-01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김종만/1998. 3/값 3,000원

98-02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김유찬/1998. 12/값 3,000원

---

**재정연구**

『재정금융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1호)/1994. 12/값 8,000원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에 관한 분석/안종범·정영헌
- 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성욱
-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세제조화의 이론적 타당성/한도숙
- 시장가격자료를 사용한 운수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추정/현진권
- 정부계층간 기능분배의 적정구조 분석/박정수
- 우리나라 실질 설비투자의 장기추세 추정/박종규
- 수출가격변동과 환율운용 지표/김종만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통권 제2호)/1995. 6/값 7,000원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김유찬
  -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노영훈
  - 지방교부세 분배방식에 관한 연구/안종석
  - 수출금융의 可用량과 금리보조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이기영
  -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김종만
  - 證據金의 시장안정화 기능과 적정수준/최홍식
  - 우리나라의 통화충격지표/이인표
-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3호)/1995. 12/값 6,500원

- 遺産行動이 減稅정책의 實物효과에 미치는 영향/배준호
- 均等犧牲假說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임주영
- 지방세 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미국 州稅를 중심으로/장근호
- 자동차 관련 세법개정의 효과: 소득 계층별 세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전영준
- 거시금융모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의 파급효과 분석/최장봉
- 先物시장에서의 조작과 감독: 문헌조사를 중심으로/홍범교
- 서평: 「Regulation and Economic Analysis: A Critique over Two Centuries」(by Richard L. Gordon, 1994)/이준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통권 제4호)/1996. 6/값 6,500원

-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성명재
-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 한국의 경우/박완규
- 개인연금의 과세유형이 국민저축과 정부채무에 미치는 효과/배준호
- 재고자산에 대한 세제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 미국의 경우/손원익
- 조세정책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안종석
-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논의와 전망/김종만
- 서평: 「The Economic Foundations of Government」(by Randall G. Holcombe, 1994)/소병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5호)/1996. 12/값 7,000원

- 개방경제하에서 조세정책이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분석/안종석
-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양준모
- 加重平均値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옥동석
-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간신용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이기영
- 석유류 과세의 소득계층별 귀착 분석/최준욱
-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개편방향 검토/한상국, 배준호

- 書評: 「Public Economics: Selected Papers by William Vickery」(ed. by Richard Arnott and others, 1994)/노영훈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6호)/1997. 8/값 9,000원

- 기업 기부행위의 동기에 관한 연구/김진수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박정수
- 메뉴비용과 가격충격분포/박종규
- 메뉴비용과 산업별 요소가격충격하에서의 독점적 경쟁기업의 가격결정/박종규
- 환율변동이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非對稱性/김종만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분석/진병용
- 인플레이션과 상대가격변동성/황의각, 현성민
- 서평: 「중앙은행론」 (정운찬 著, 1995)/정진호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7호)/1997. 12/값 7,000원

-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을 위한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분포의 추정/성명재
- 교육서비스와 소득분포 평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국중호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행태분석: 기간간 최적모형을 중심으로/김규한, 이명훈
- 우리나라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결정요인 분석/김종만
- 주가변동성의 추정과 활용/이준행, 최홍식

※ 제5권 제1호부터 『재정금융연구』를 『재정연구』로 改題

『재정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8호)/1998. 8/값 7,000원

- 공·사교육비와 조세/박기백
  - 조세정책 평가모형에서 유산이 주는 경제학적 함의/김재진
-

- 인적투자와 물적 이전에서 나타나는 과세효과/국중호
- 경제체제 전환기의 신용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인정책/한도숙
- 서평: Do Deficits Matter?(by Daniel Shaviro, 1997)/이지순

『재정연구』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1998. 12/값 7,000원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 안종석
- 자본비용의 추정: 상장기업을 대상으로/윤종인
- 통화정책의 주가에 대한 효과분석/이상섭
-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축적과정에서의 유산의 역할 및 행태분석/배준호, 김진수
- 공공재의 수요와 불확실성/이철인

『재정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1999. 8/값 6,000원

-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비용의 세대별 귀착/전영준
- 수직적 상품차별화된 산업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분석/연태훈
-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 지속 가능 시한의 변화: 단순 시뮬레이션 분석/박종규
- 다국적기업들의 기업 내 자금흐름에 대한 이론적 분석/한도숙
- The Effects of Off-farm Work Experience and the Regional Labor Market Situation on Farmer"s Exit and Off-farm Work Participation/이명헌

『재정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1호)/2000. 1/값 7,000원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감면 규모 추정/박기백
- 인구집적과 도시의 성장: 정태모형과 그 실증적 함의/김진영
-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마재신

- 同次性, 실질잔고효과와 고전파적 이분법/장세진
- The Long-run Burden of Health Care Costs on Public Finance: An Alternative Forecasting Approach/김종면

『재정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2000. 7/값 7,000원

-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최적관세: 小國과 大國의 경우/정재호
- 고정투자에 대한 재무제약가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윤종인
- 지방재정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안종석
-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 거시적 구조 변화와 미시적 원인/박종규, 김진영
- 서평: Cybertaxation: The Taxation of E-Commerce/홍범교

『재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3호)/2001. 4/값 7,000원

-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에 관한 연구/성명재
-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정재호
- 통화옵션에 나타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추정/박창균
-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licy Analysis for the Social Optimum/권오성
- 서평: 20세기 빈부격차를 설명하는 비경제학자들의 견해/김진영

『재정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2001. 12/값 5,000원

- ACE제도의 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과/곽태원
  - 로비활동하의 간접세 결정에 관한 연구/이인호
  - 지방세추계 모형 및 요인분석/김현아
  - Neighborhood Structure and the Viability of Cooperation/전택승, Rajiv Sethi
-

『재정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5호)/2002. 7/값 5,000원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김상현·현진권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계계의 구축/국중호
-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김정유
-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권오성
- 영문요약

『재정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2002. 12/값 5,000원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김상현·현진권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계계의 구축/국중호
-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김정유
-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권오성
- 영문요약

『재정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2003. 7/값 5,000원

- 1990년대 전·후반기의 소득세 부담률 변화의 요인별 효과 분리추정에 관한 연구/성명재
- 형평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현진권, 임병인
-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김정완
- Interest Group, Government Structure and Public Expenditure/김상현

『재정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8)/2003. 12/값 5,000원

- 직접세와 간접세 인하의 지역경제 성장효과 비교: CGE모형의 정태 동태 분석/지해명
-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모형의 분석/유승훈
- 國際的 租稅 非中立性 測定에 관한 研究- 우리나라와 G7 國家의 個人 포트폴리오 投資를 중심으로/이경근

『재정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19)/2004. 8/값 5,000원

- 한계세율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노현섭·서갑수·서종길
- 레버리지가 기업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System-GMM을 이용한 상장제 조기업 패널 분석/조삼용·신선우·이훈현
- 무선데이터 통신 과금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김정유
-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Nonparametric Structural Models by Instrumental Variables Method/김우철

---

재정포럼
------

『재정포럼』 1996. 7월호부터 계속

---

기타보고서
-------

- 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  
안중범(편)/1993. 10/값 4,000원
  - 새로운 경제질서와 생산성 향상  
장현준/1994. 10/값 6,000원
  - 개정세법 총람 (I)(II)(III)  
/1994. 10/값 100,000원
-

- 
- 재정·금융정책과 자유주의 사상  
이근식/1994. 12/값 8,500원
  -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한상국/1995. 6/값 6,000원
  - 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한상국/1995. 12/값 6,000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이인표·안중범·최흥식/1995. 12/값 6,5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임주영 외/1996. 11/값 5,500원
  -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이철송/1996. 12/값 6,000원
  -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이준규·이태희/1997. 3/값 4,000원
  -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함의  
정영현·심재진(역)/1997. 4/값 4,000원
  - 세무자문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건창/1997. 6/값 6,000원
  - 우리나라와 BIS, 미국 및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최장봉·가경수/1997. 6/값 5,000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김종만·김관영/1997. 9/값 7,000원
  -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 범위  
옥동석/1997. 10/값 5,000원
  - 캐나다의 재정  
박기백/1997. 10/값 6,000원
  - 독일의 재정  
김유찬/1997. 11/값 6,000원
-

- 영국의 재정  
최준욱/1997. 11/값 6,000원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현진권 편/1997. 11/값 13,000원
  - 조세정책50년 제1권~제6권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제2권: 총괄자료집, 제3권: 소득세자료집, 제4권: 법인세자료집, 제5권: 소비과세자료집, 제6권: 재산과세자료집)  
최광·현진권 편/1997. 12/전 6권 1질(CD 포함) 25만원, 각권 4만원
  -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Globalization, Unification and Tax Policy)  
김유찬 외/1997. 12/값 8,000원
  -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김유찬 외/1998. 2/값 11,000원
  -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우택/1998. 3/값 9,000원
  -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 외/1998. 3/값 5,000원
  - 일정한 조건의 조세정책  
차병권/1998. 3/값 9,000원
  -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대도시경제의 내발적 발전과 자치단체 재정개혁 전략  
황한식 외/1998. 7/값 6,000원
  - 미국과 캐나다의 세수추계  
성명재/1998. 11/값 6,000원
  - 지방재정 구조분석 -전남·전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광수·김일태/1998. 12/값 4,000원
  - 주류 유통·판매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성명재/1999. 12/값 4,000원
  -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파급효과  
노영훈, 심재진 역/1999. 12/값 4,000원
-

- 
- 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손원익/1999. 12/값 5,000원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현진권(편)/2000. 4/값 13,000원
  - OECD 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2002. 1/값 8,000원
  -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최광/2002. 1/값 8,000원
  -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최명근/2002. 3/값 4,000원
  -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과 정책시사점  
    국중호·한상국/2002. 10/값 5,000원
  - 한일 지방세 구조와 세부담 특성비교  
    국중호/2002. 12/값 6,000원
  - 조세사면 - 한국에서의 정책적 유용성-  
    최병철/2002. 12/값 4,000원
  - 학교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교육 행·재정체제의 개혁  
    - 탈통제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 -  
    이진순/2002. 12/값 6,000원
  -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원윤희·전택승·황수철·안중범·임주영/2002. 12/값 15,000원
  - 인적자원의 장기추이 분석과 복지재정 잠재부담 전망  
    김진영·안주엽·김중면·전영준
  -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이일영·김연철·양문수·이건범·이남주·전병유/2003. 5/값 7,000원
  -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옥동석/2003. 8/값 9,000원
  -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이준규/2003. 9/값 10,000원
-

- Tax Equity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정광수/2003. 11
  - 전설의 10년: 1990년대 미국경제 성공의 교훈  
김교식/2003. 11
  -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전승훈/2003. 12/값 7,000원
  -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배준호/2003. 12/값 7,000원
  -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김상현·이영·김진영·민동기·사공 용/2003. 12/값 12,000원
  - 고령화 현상에 수반되는 사회경제 변수 및 의료지출의 변화  
김종면·이철희·전영준/2003. 12/값 8,000원
  -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이형구·전승훈(편)/2003. 12/값 150,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장근호/2004. 6/값 20,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박정수/2004. 6/값 15,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국중호/2004. 6/값 15,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안창남/2004. 6/값 13,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김유찬/2004. 6/값 13,000원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택승/2004. 8/값 10,000원
  -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대한 이해  
전승훈 외/2004. 9/값 13,000원
-

-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외/2004. 12/값 9,000원
  -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 외/2004. 12/값 23,000원
-

## 韓國租稅研究院 圖書會員 加入案内

###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1년간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간행물(비판매용 도서 포함. 단 일부 용역보고서 등은 제외)을 우송합니다.
- 2) 기발행된 간행물 구입시 4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3) 회원에게는 본원 도서관의 소장도서 및 통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4) 본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우선 초청대상이 됩니다.
- 5) 가입기간중에 회비가 오르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 2. 가입방법

- ◆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연구원 연구홍보팀으로 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고(Fax 또는 전화신청도 가능)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 회원의 자격기한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 ※ 2~3년간 장기가입도 가능합니다.

### 3. 연간회비

- ◆ KIPF 도서회원 가입비 : 10만원
- ◆ 『재정포럼』 구독료 : 3만원
- ◆ 도서회원 가입 및 『재정포럼』 구독 : 12만원

### 4. 회비납부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계좌번호 : 441-05-000011)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문의처 : 우편번호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 연구결과 요약집

---

2005年 8月 22日 印刷

2005年 8月 25日 發行

發行人 최 용 선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2186-2114(代) FAX: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出版 및  
印刷 고려문화사

© 韓國租稅研究院 2005

ISBN 89-8191-294-7

---

\* 잘못 만들어진 책을 바꾸어 드립니다.